

2021학년도 학생건강증진계획(안)

학교 보건관리 분야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미래교육

1.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2.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3.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책임교육

1. 출발선이 같은 교육
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3.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참여교육

1.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2.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확산
3.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지속가능한
생태·해양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틈새 없는
학교안전망

부산교육은 언제나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이 먼저입니다

CONTENTS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2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6
3.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운영.....	9
4. 학교 건강검사 철저.....	11
5.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15
6.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17
7.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 운영.....	25
8. 비만예방 등 학생건강 관리.....	27
9. 학생 구강보건 관리.....	29
10. 소아당뇨 학생지원·관리체계 강화.....	32
11.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부산건강학생 만들기.....	33
12.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36
13.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 학생 돕기.....	38
14.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증진 사업 적극 참여.....	40
15. 2021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제17차).....	41
16. 보고목록.....	41
[보고서식 1]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43
[보고서식 2] 성교육 실시 현황.....	44
[보고서식 3]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45
[보고서식 4]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46
[보고서식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47
[보고서식 6]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48
[보고서식 7]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50
[보고서식 8]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53
17. 참고자료 목록.....	54
[자료 1]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제도개선 방안.....	55
[자료 2]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설비 기준.....	57
[자료 3]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61
[자료 4]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62
[자료 5]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106
[자료 6] 학교 감염병 발생시 교육지원청 대응요령.....	107
[자료 7] 학교 감염병 발생시 나이스 보고 요령.....	108
[자료 8]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109
[자료 9] 부산관내 보건소의 2021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110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현황

- 모든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6차시 이상 보건교육 지속적·체계적 운영
- 초·중등교육과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학년별 14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 실시 (관련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 연간 14차시 이상 실시)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운영모형 개발·보급('15.2월)
- 부산시교육청 개발 성교육 인정도서 활용 학교 : 중10교(2020년)
※ 성교육 인정도서 「성과 건강」, 「인간과 성」
- 보건교과 선택교(2020년): 중32교, 고40교, 특수학교 5교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 실시

추진방향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
 -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

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6차시 이상 지속적·체계적 운영

※ 일회적·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업시수 확보

예) 초5학년 16차시, 중1학년 16차시

- 학교 보건교육 실시현황 및 ‘보건’ 과목 선택 현황 보고: [보고서식 1]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율형 교과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교육실 별도 설치 시 보건실 근접 설치로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학생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교과와 연계한 포괄적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년별 연간 14차시 이상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의무적 실시
 -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연간계획 학교교육계획에 포함
 - 선택교과(중학교 ‘성과 건강’, 고등학교 ‘인간과 성’, 중·고등학교 ‘보건’) 및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연계하여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부산시교육감 인정도서 <성과 건강>. <인간과 성> 활용 및 선택교과 확대
 - 성교육 담당교사 주관, 학년별 관련교과(부장) 협의회 구성,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성교육 표준안 유형 >

구분	표준형(교과통합형)	전담형	초빙형	융합형(혼합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교과 담당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성교육 실시 ▫ 교과관련 내용에 맞춰 시간 확보 ▫ 교과 관련성이 없는 시간은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보건 또는 관련 전문 교사가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성교육 실시 ▫ 11학급 이하의 학교 규모에서만 활용이 가능함 ▫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성교육을 위한 시수를 배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와 외부전문가 또는 보건교사와 기간제 교사(보건)를 활용하여 성교육 실시 ▫ 성교육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운영 ▫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형, 전담형, 초빙형을 학년단위로 선택적으로 구성

-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집중 학년제 실시
 - 대상 및 방법

대상	시수 및 방법
초5학년	5차시 집중교육(연간 14차시에 포함하여 운영)
중1학년	5차시 집중교육(연간 14차시에 포함하여 운영)
고1학년	3차시 집중교육(연간 14차시에 포함하여 운영)

- 교육내용: 5차시 교육내용 요소를 포함한 집중교육 실시

구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차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탄생, 생명존중 등)	사춘기의 변화/성차이/ 신체 이미지	인간관계로서의 이성 교제 성별고정관념과 인권
2차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인간관계로서의 이성 교제	임신과 피임, 출산
3차시	사춘기의 변화/성차이/신체 이미지	또래의 영향과 의사결정 대화의 기술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4차시	또래의 영향과 의사결정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5차시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 초4학년 전 학급 및 중1학년 희망 215학급 대상 생애주기별 성폭력예방 교육
(양성평등교육포함) 1차시 강사 지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성교육 연구회 자료집(지도안 포함) 및 성교육 집중학년 5차시 워크북활용(2021. 2)
-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성교육’ 실시
 - 대상: 250교 연1회 강사지원(성교육 집중학년 우선 지원)
 - 방법: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내용: 생명의 탄생과 생명존중, 성인지개선(성차이와 사춘기 심리, 신체이미지), 성
평등, 성폭력예방 등
-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전, 캠페인 및 정책제안 동아리 운영
 - 공모전: 초·중·고 연 1회, 포스터·UCC·캘리그래피 등
 - 정책제안 동아리: 중·고 총 7팀 운영
 - 추진시기 및 방법: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교육연구회 지원활동 강화
 - 장학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성교육 연구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미래교육원 지정연구회 및 자율연구회 적극 참여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저작권재산권 유의)
- 성교육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 유지
 - 담당교사의 성 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관련 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사전 지도안 확인 및 담당교사 입장 지도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원격연수 과정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2021 교원 필수 연수 통합과정 II 원격직무연수’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포함 필수연수, 교원·전문직용, 운영기간: 2/1 ~ 12/3)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2021 행정(학교) 필수연수 통합과정 I 원격직무연수’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포함 필수연수,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사립학교 직원용, 운영기간: 1/11~12/3)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성인지up 인권 up,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필수연수, 운영기간: 2/1~12/3)
 - 부진기관 기준: 성고충상담원 지정(최소 남1, 여1명) 여부 및 고충상담원 연수 이수 여부, 고충상담창구 설치 여부(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필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여부, 평점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 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등(2021 여성가족부 지침 참조)
- 관리자, 고위직(부장교사, 행정실장)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연수
(추후 상세 안내)
-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 교직원 연수 지원(추후 상세안내)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신청교 150교 대상 3시간 강의 프로그램 지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 필수 대면교육 1시간 프로그램 지원(추후 상세안내)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미디어리터러시 콘서트(40교)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뮤직토크 콘서트(30교)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샌드아트 콘서트(20교)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기본방침

-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건강증진개발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제5904호)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흡연·음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감

현황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
-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음주율(2020년 부산시 학생 흡연·음주실태조사) 결과
 - '16년 이후부터 '19년까지 흡연율이 증가하였으나 '20년에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지표는 차츰 증가 추세임. 음주율은 증가하다가 '19년부터 계속 감소함.

<표1> 남·여 중·고등학생 흡연율 및 음주율(부산 학생흡연·음주실태조사결과)

구분	흡연율(%)				음주율(%)			
	2019		2020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고등학생	5.7	1.5	4.5	1.4	9.8	6.6	6.6	4.2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 2020. 12. 7.(국민권익위 제2020-601호) 아동청소년 간접흡연예방 제도개선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내 흡연구역 설치 절대금지와 절대보호구역내 금연구역 설치(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실시)

-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및 금연구역 지정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 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6.11.)에 따라 **마약류**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교육 실시
 - ※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 「학교보건법」 제9조
 - 아동·청소년 간접흡연피해 방안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국민권익위 의안제2020-601호)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학교 내 조치방안: 외부인·종사자, 사전안내 및 민원 응대 요령 [참고자료 1]
 -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절대 금지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 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 **학교주변 금연구역(절대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지정·운영(「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고시 제2020-246호」)
 - 학교(유치원 포함)절대보호구역 전면 지정(전 학교) 및 금연표지판 설치 완료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해 공유하여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생 및 교직원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필수실시(「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제5904호)」)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나.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 신규 및 (준)심화형업무 담당자 매칭연수, 초등관리자 연수, 일반교원 대상 원격 연수 등에 해당 교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 부산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다. 식약처 등 전문부처와 연계한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 (초등 저) 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 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 (중등) 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 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3

보건실 환경 조성 및 운영

기본방침

- 보건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 기준에 맞도록 시설·설비 개선·보완
- 학생들이 청결하고 안락한 조건에서 부상 치료(응급처치) 및 요양·상담

현황

- 학교보건실 현대화 현황

(2021.1.1. 기준)

구 분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학교	304	171	144	15	634
완료학교	301 (99.0%)	167 (97.7%)	142 (98.6%)	12 (80%)	622 (98.1%)
2021년 계획 학교	1	0	0	0	1
미추진 학교	2	4	2	3	11

추진방향

- 보건실 면적 및 설비·기구의 법정기준 확보 철저
 - 근거: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보건실 면적 기준
 - 초·중·고(각종·특수 포함): 66㎡ 이상
 - ☞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 33㎡ 이상 확보
 - 유치원: 15㎡ 이상(정원 100명미만은 10㎡ 이상)
 - ☞ 형식적인 설치·운영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설비·기구 권장기준 준수(관련 공문: 평생교육체육과 -5233, 2014.4.28.)
 - 남·여 공학 학교는 안정실을 남·여 구분 설치(유치원 제외)

- 학교 신설 시부터 학교보건법령에서 정한 기구 등을 확보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 기준에 맞도록 시설(시설부서 협조)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
 - 2021년 학교보건실 현대화 추진 학교수: 1교
 - 학교보건실 현대화 시설·설비 기준 [참고자료 2]
 - 보건실은 관리실, 처치실, 안정실, 상담실 등으로 구획 설치
 - 보건실 위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 선정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는 기준(교육규칙¹⁾)에 맞도록 확보하되, 필수기구는 반드시 확보
 - 구급약품 및 구급처치용 재료 확보, 냉·난방시설, 침대, 일반비품과 의료기구, 건강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는 수납장 등 확보
 -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보건실 상태를 진단하여 문제점(노후, 면적 협소, 위치 부적정 등)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 수립 추진
 - 보건실 내부 환경위생 관리 철저
 - 침구(침대, 이불, 베개 등) 정기 세탁, 환기상태 및 곰팡이 유무 등 점검(실내공기질 점검 대상)
 - 보건실에 여성용품(생리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응급상황 시 원활한 지원
 - 보건실 여성용품(생리대) 구입 예산 확보
 -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 철저
 -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활용(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활동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실시
 - 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 학교의사 및 약사의 직무
 - 학교보건계획 수립 및 교내 환경위생 관리 자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학교의사), 의약품 및 실험실 독극물 관리 등에 관한 자문(학교약사) 등
 - 위촉: 면허(의사·한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
 - 위촉된 학교의사·약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
-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참고자료 3]

1)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참조

4

학교 건강검사 철저

기본방침

-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학생 건강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현황

- 학교 건강검사의 종류

구 분	대 상	검사시기	검사종목 및 단가	검사방법	
신체발달상황	초·중·고 전교생	연중	키, 몸무게, 비만도	초1,2,4,5학년과 중·고1,2학년은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학년은 학교 교직원이 실시	
건강조사	초·중·고 전교생	4월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 제2항	전학년 학교 실시	
건강검진	초 1·2·4·5학년, 중·고 1·2학년	연중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2항	학생(학부모)들이 지정 검진 기관 방문 실시 원칙 (학교회계 전액 부담)	
	초3,6학년	연중	구강검진 (7,600원/1인당)	”	
별도 검사	소변검사	초·중·고 전교생	3월~10월	단백, 잠혈 (740원)	초 1,2,4,5학년과 중·고1,2학년은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학년은 한국학교보건협회부산지부에서 출장검사 (학교회계 전액 부담)
	결핵검사	고 2, 3학년	연중	결핵 (3,310원)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에서 출장검사(학교회계 전액 부담)
	시력검사	*초·중·고 전교생	연중	시력	교직원이 실시

○ 연도별 건강검진 실시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학생수	121,611	111,911	111,999	109,404	101,727	101,830
실시자수	120,219	110,447	110,469	109,169	101,468	101,319
비율 (%)	98.9	98.7	98.6	99.8	99.7	99.5

※ 12월말까지 미실시한 학생은 익년도 2월말까지 검진 독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미실시

추진방향

- 학생건강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20.3.1.~) 업무 추진
 -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 삭제항목: 혈액형, 색각, B형간염
 - 추가항목: 비만학생의 HDL, 중성지방, LDL(계산값), 허리둘레
 -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 문진표: 건강검진 대상학생(초 1·4학년, 중·고 1학년) 병원에서 작성
 - 건강조사서: 전교생 대상 학교에서 조사
 -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 신체발달 측정 1학기 내 완료, 2021. 10. 15.(금)까지 결과 보고[보고서식 4]
 - 개정 내용을 반영한 「2021 학생건강검진 실시 요령」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학교 및 검진기관 등에 적극 홍보
- 학교 건강검사 추진 철저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되,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검진기관 선정 시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별도 선정
 -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다수의 검진기관 지정
 - 학생들의 검진기관 방문일자 별도 지정 금지(학생 몰림현상 발생 및 형식적 검진 초래)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학생 건강검사 실시요령」: [참고자료 4]에 의거 실시
- 결과보고: [보고서식 5]에 의거 제출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④항)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검사결과에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학교의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완료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

○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검사 관련 민원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별표 19]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 ※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변경) 운영
 - 2021~2023년 표본통계 생성을 위한 표본학교 현황: 추후 통보
- 유치원생 건강검진 철저
 -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5
 - 내용
 - 유치원장은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실시
 - ※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
 - 검진결과 보관 :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건강검진 학부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은 후 그 결과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
 - 개학·입학 등 특정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여 별도의 비용 부담 및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용 국가부담)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검진시기가 결정되므로 학부모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유초등교육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 장학지도 시 유치원생 건강검진 이행여부 확인 점검 협조
 - ※ 효율적인 유치원생 건강검진 추진방안 안내 [평생교육체육과-3728, 2014.3.27.] 공문 참조

5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기본방침

-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지원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사회(가정 포함) 전문기관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 역량 제고

현황

- 2020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구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			전문기관별 의뢰 현황(의뢰율%)					
	검사실시 학생수	관심군 학생수 (관심군비율%)	2차 검사 조치 학생수 (의뢰율%)	Wee 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병의원	기타	계
초	50,335	913(1.8)	855(93.7)	106	345	121	216	67	855
중	26,277	1,080(4.1)	1,021(94.5)	204	428	130	239	20	1,021
고	24,862	675(2.7)	641(95.0)	61	248	127	193	12	641
계	101,474	2,668	2,517	371	1,021	378	648	99	2,517
		(2.6)	(94.3)	(14.7)	(40.6)	(15.0)	(25.7)	(3.9)	-

- 「학교보건법」 개정('13.12.30.)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정신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책무 강화

추진방향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 검사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
 - 기타 학년 학생은 이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생활지도 등 추수관리 지속
 - ※ 학교 내·외 사례관리 체계 구축, 승급 및 분반 등에 따른 학생관리 공백 방지

- 검사절차: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II, 중등 AMPQ-III)를 사용하고 기타 표준화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 실시 지양
 - ※ 기본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시 관심군 대상 표준화도구 적용 가능
- 검사방법: 온라인 검사(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실시 가능)
- 검사시기: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실시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별도 안내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학부모) 상담·치유 지원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 대·내외 공개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후관리 철저: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 방지
 -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료 요청·확인,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하되, 필요 시 재검사 등 학생 관리 철저
- 학교 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생활지도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운영 등 단위학교 학생관리 역량 강화
 - 위험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 시스템 정립,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 마음건강 자문의사 위촉·활용,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전문성 강화 등 지원
 -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학생정서케어시스템」의 지원 서비스 연계

6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방침

-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추진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학교 관계자 대상 연수 등 예방 체계와 함께 소독 및 방역물품 비치, 모의 훈련 등 대응체계 강화

현황

- 부산시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12. 31. 기준)

확진자			자가격리자		
학생	교직원	계	학생	교직원	계
141	29	170	3,577	850	4,427

- 학생 감염병 발생현황(부산)

연도별	인플루엔자	유형성 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신증후군	유형성 가래만염	홍역	결핵	2급감염병 중 장관 감염병	기타		계	
										법정	비법정		
2018	16,452	162	1,043	163	65	500	0	9	A형간염(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 장티푸스(1)	4	203	110	18,711
2019	16,323	163	457	804	29	263	1	8	A형간염(3) 세균성이질(2) 장티푸스(2)	7	184	145	18,384
2020	730	69	144	25	2	35	0	5	세균성이질(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 장티푸스(1)	3	45	27	1,085

- * 2020년도 발병 순위 :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유행성각결막염>수족구병
-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개학 연기, 학생 밀집도 조정을 위한 원격수업 실시, 개인위생수칙 교육 강화 등으로 코로나19 외 감염병 환자 발병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음

추진방향

가.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강화 및 교실 내 주기적 환기 지도
 - 1830(1일 8회 30초 손 씻기) 운동 실천 생활화 지도 및 기침예절 교육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자료 활용
 - * 코로나19 대응 손씻기 음원 및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육자료 모음 활용 권장
 -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탑재: 사용자별 정보>교직원>부서별자료실>학교생활교육과>학교보건>공지
- 월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철저
-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각결막염)을 선정하여 초·중·고등학교용(교사 및 학부모용)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보급(학교생활교육과-2312, 2019.2.13.)
 - ⇒ 학생건강정보센터 (학교보건>감염병예방>감염병 예방 교사 및 학부모용 리플렛(한국어, 영어, 따갈로그,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2019.3.14.)(검색 : 감염병)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가정과 연계한 감염학생 관리

- ▷ 감염병으로 등교중지(격리) 학생 생활지도 강화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통제
- ▷ 가족내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전 의료기관 진료 지도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
 - 감염병 유행 시기 병문안 자제, 특히 외국 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보건소 즉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하는 ‘주간 감염병 소식지’ 를 학생 및 학부모 예방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

* 주간 소식지는 ‘업무시스템 공지게시란’에 탑재

- 학교관리자 및 교사, 교육청 담당자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실시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대상 “감염병 대응 길라잡이 직무연수” (부산교육연수원) 과정 적극 참여
 - 학교 감염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 양성 연수 실시: 보건교사 20명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는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지속 실시 예정

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 [참고자료 5]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시 등교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
 -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에 따름

♣ 감염병 환자 출결인정 기준

-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 으로 인정(등교 중지 후 병원진료 여부 확인)
- ▷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결석한 경우, 즉시 병원 진료하고,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또는 휴업·휴교 조치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98~p104) 준수 철저
 - 등교중지: 실시 절차 및 등교중지 학생의 관리 등 이행
 - 휴업·휴교: 실시 절차 및 휴업, 휴교에 따른 조치 등 이행
 - * 감염병으로 인한 임시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결정한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유선보고

○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에서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인지 즉시 NEIS에 입력하고,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참고자료 6]

* 신고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NEIS를 통한 감염병 발생 보고 철저(학교→교육지원청) [참고자료 7]

- ▷ 학교 담당자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NEIS 시스템에 따라 보고
- ▷ 최초 보고 이후 '완치 보고, 보고 오류 수정' 등 변동사항 보고 철저
- ※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참고자료 5]

- 교육지원청은 매일 NEIS 시스템을 확인하여 관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시교육청에 지연제출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긴급 방역조치, 언론 취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 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보고서식 6】

다. 학교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 학생 정기 결핵검사(흉부X-Ray촬영)를 통한 유소견자 조기 발견 치료체계 구축

- 대상: 중·고등학생
- 검사기관: 중고등학교 1·2학년은 정기 건강검진 시 포함 실시(학교 지정 병의원),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해당학교 방문(출장) 검진 실시

○ 교직원 결핵 감염 여부 확인 철저

▷ 결핵예방법 안내(발췌)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p>제11조(결핵검진 등)</p> <p>①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p> <p>①항 제1호,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검진 : 매년 실시 - 잠복결핵검진 : 근무기간중 1회 <p>③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p>

* 보건당국의 결핵예방(결핵의심자,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결핵검진(X-선검사), 잠복결핵검진 무료검진 실시하고 있음

- 교직원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처분(결핵예방법 제34조)
- 매년(국가건강검진 실시 연도 제외) 결핵검진 실시 방안

구분	결핵검진(X-선검사)	잠복결핵검진
검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후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 검진 ▷ 초·중·고등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에서 학교 방문 시 검진 ※ 학교방문 검진 미실시의 경우, 일과 후 보건소등 의료기관 방문 검진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거점학교 지정 등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 별도 안내 예정 ※ 공립유치원(병실 포함)은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에서 방문 검진 지원 	※ 보건복지부의 세부 지침 계획에 따라 추후 통보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회계에서 지출 -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 검진비: 6,000원/1인 - 보건소 검진비: 6,500원/1인 ※ 의료기관 검진비는 기관별 검진방법에 따라 상이 	

- 교직원이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복귀전에 X-선검사 실시
-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인력 및 용역업체에서 배치되는 인력(기간제 교사, 계약직 직원, 방과후학교 강사, 외부용역업체 직원 등)은 신규채용 시와 재계약 시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 여부 확인 철저
 - * 교직원의 결핵검진(X-선검사)은 국가건강검진이 있는 연도에 실시한 것을 당해연도의 결핵검진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년에 1회(사무직) 또는 1년에 1회(비사무직)]
- 학생 및 교직원 결핵 발병 시 「학교결핵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내 결핵 전파 조기 차단
 -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기숙사 입소 시 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를 3~4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학교별로 보건소에 무료 결핵검진 가능여부 확인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결핵관리지침」 :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 사용자별 정보>교직원>자료실>학교생활교육과>학교보건>35번 자료

라. 학생 예방접종 관리를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

-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 및 교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기록은 나이스와 질병관리본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매 학년도(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가 종료되기 전 학생건강기록부에 예방접종 기록 등의 누락, 입력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
 - * 학생건강기록부에 직접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활용
- 학교 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접종 시에도 사전 예진 철저히 부작용 방지
-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적극 홍보
- 외국 전입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외국에서 전입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예방접종 확인
 - ☞ 외국 거주 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내 보건소(또는 병·의원)에서 해당 연령층에 필요한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3월말까지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운영
- 월별 감염병 예고제 실시
 - 월별 다발하는 감염병을 매월 예고하여 각급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
 - * 월별 주요 감염병 발병 현황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참조】

- 학교 유행정보제 운영
 - 학교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대응하여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학교유행정보 발령
 - 학교유행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학교관계자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마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소아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교육청 감염병 대책 자문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학교감염병 위기대응 모의 훈련
 -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를 활용하여 자체계획 수립 후, 연 1회 이상 실시
- 감염병 집단 발생학교 관리 강화
 -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집단발생학교 또는 결핵 발생학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 *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참고자료 8]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시설환경 조성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 확충(복도, 식당입구, 화장실 등)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화장실에 비누·종이타월·손 건조기 비치, 개인 손수건 지참 지도
 - 교내 정기 방역 소독 실시(의무화): 연 5회

♣ 교내 정기방역 소독 실시 기준

- ▷ 실시 횟수: 4월~9월(1회 이상 / 2개월), 10월~3월(1회 이상 / 3월)
- ▷ 실시 방법: 소독 대행업체(소독필증)
-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4항

-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2월, 12월) 또는 감염병 유행정보, 주의보 등 발령 시 추가 실시 권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 확보
 - 학생수 및 학급수 등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발열 감시, 전파 차단, 소독 등을 위해 방역물품 확보

<p>♣ 권장 기준</p> <p>① 체온계: 교실 당 1개 + 보건실용(2~3개)</p> <p>② 의료용 장갑: 보건실용(학급수 × 5개)</p> <p>③ 일회용 마스크: 교실 당 20개 + 보건실용(학생 10명당 3개)</p> <p>④ 기타(필요 시): 손소독제, N-95마스크, 눈보호대(안대) 등</p>

※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강화된 학교방역물품 비치 기준 적용

- 해외 출입국(봉사활동, 여행, 견학 등) 시 학생·교직원 대상 귀국 후 감염여부(잠복기간) 모니터링 강화
 -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 제공
 - 출국 전 필요한 예방접종 실시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즉시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및 교육지원청 신고
- 학교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
 - 교육지원청별 긴급 방역물품 및 방역소독비 지원: 50,000천원
 - 각급학교 방역 지원: 8,321,495천원

<p>♣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p> <p>① 교내 확산되지 않도록 환자 신속하게 격리조치</p> <p>② 일일 결석자 원인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 협조</p> <p>③ 예방요령 등 보건(계기)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p> <p>④ 예방요령 및 예방접종 가정 안내(가정통신 등), 학교홈페이지 이용 홍보</p> <p>⑤ 보건소 및 병·의원 치료 안내, 정보공유, 역학조사 협조 등</p> <p>⑥ 특별 방역·소독 실시 및 시설물 위생관리, 수시환기 지도</p> <p>⑦ 상담 실시 및 치료·투약과정 확인</p> <p>⑧ 생활지도 강화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시행</p>
--

7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 운영

기본방침

- 학생 척추측만증 예방 및 조기 치료 개입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 척추측만증 학생 보조기 제작 및 치료비, 이상자 추서관리 지원

현황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부산시 지원으로 추진하던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이 2017년도로 종료됨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척추측만증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척추측만증 환자가 85~90%이며, 골격 성장이 왕성하며 성장이 완료되는 청소년기(만11세~만17세)에 주로 발병됨
- 청소년들의 운동량의 감소와 각종 스마트기기의 사용시간의 증가로 장시간 올바르지 못한 자세나 습관 등이 척추측만증의 발병원인으로 지목
-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은 요통·어깨통증·두통 유발, 갈비뼈·골반뼈의 변형으로 심폐 기능 이상 유발, 호르몬과 소화기능 불균형 초래, 집중력과 성장장애 유발 등 건강 및 학습 장애 초래
 - 청소년기에 오는 척추측만증은 통증이 거의 없고 외형적인 척추 변형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율이 낮아 예방 및 조기치료 필요
- 척추측만증 검진 현황

구분	학년별	2017			2018			2019		
		검진 학생수	이상자	비율 (%)	검진 학생수	이상자	비율 (%)	검진 학생수	이상자	비율 (%)
중학교	2·3학년	53,246	337	0.63	51,598	280	0.54	47,932	186	0.39
고등학교	2·3학년	69,118	409	0.59	63,481	350	0.55	55,243	313	0.57
총계		122,364	746	0.6	115,079	630	0.54	103,175	499	0.48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건강검진 미 실시 → 2020년 사업 축소 운영

- 2019년 결핵검진과 연계한 척추측만증케어서비스 사업성과 저조 및 2020년 중학생 결핵검진 사업(부산시 주관) 폐지로 인해 교육청 주관 사업추진 계획

추진방향

- 2021년도 척추측만증케어서비스 사업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대상 : 초 4학년 이상, 중·고등학생 전학년
 - 주요내용 : 건강검진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대상 척추측만증 보조기 제작 및 병원치료비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학교를 통한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교육청에서 학생보호자 계좌로 입금
- 척추만곡 이상자 선별, 척추보조기 제작 및 병원치료비 지원 시스템 구축
 - 보조기 필요 학생 50명(저소득 가정 우선) 선발
 - 초 4~5학년, 중·고 1~2학년은 학생건강검진을 통한 ‘척추측만증 의심자’ 선별
 - 초 6학년, 중·고 3학년은 자가진단 및 개별검사를 통한 ‘척추측만증 질환자’ 선별
- 각급학교 척추측만증 예방 교육 및 척추측만증케어서비스 사업 홍보를 통해 의심학생 조기 파악 및 지속적 관리
 - 교육자료를 활용한 청소년기 척추측만증 발생 예방교육 실시
 - ⇒ 척추측만증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choolhealth.kr>)
 - 신학기 척추측만증 교육 리플릿 배부, 배너 및 포스터 등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8

비만예방 등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침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비만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현황

- 2019년도 비만학생 현황(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 통계, 부산)

* 2020년도 비만학생 현황은 코로나19로 2020년 건강검사 연기되어 미파악

구 분	검 사 학생수	경 도		중등도		고 도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2,230	185	8.3 %	147	6.6 %	28	1.3 %	360	16.1 %
중 학 교	1,668	157	9.4 %	129	7.7 %	47	2.8 %	333	20.0 %
고등학교	2,009	180	9.0 %	197	9.8 %	82	4.1 %	459	22.8 %
합 계	5,907	522	8.8 %	473	8.0 %	157	2.7 %	1,152	19.5 %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17. 4.12.)

추진방향

-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부산시 연계)으로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량 증진
 - 사업대상 :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교 41교
 - 사업기간: 12주(3개월)

- 사업내용: 놀이형 신체활동,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과일간식 제공
- 비만학생 현황 파악 및 지도·관리 철저
 - 학생 비만 예방 · 관리 1학교 1프로그램 의무 운영
 - 대상: 초, 중, 고, 특수 모든 학교
 - 운영방법: 학교 자체 비만 예방 · 관리 프로그램 운영(줄넘기, 스포츠클럽, 걷기, 기타 학교체육 연계), 지역보건소 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비만 예방 · 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 학생 비만도 전수조사 실시: 연1회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보고로 같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교내 판매 금지
-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Good SMILE 프로그램 운영
 - 체육 · 보건 · 급식분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비만 관리
 - 운영대상, 운영방법 등 세부추진계획: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비만예방 등 학생건강관리 활용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choolhealth.kr>) 적극 활용
 - 학교보건, 학교급식, 학교체육, 교육환경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2012 ~ 2014 창의경영 건강증진모델연구학교 운영자료집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 탑재

기본방침

- 구강질환자의 경우 건강생활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질환을 예방함
- 치아 질환은 한 번 나빠지면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공통점이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현황

- ' 19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 전국 중학교 27.0% < 고등학교 49.0%
 - 부산지역 중고등학교는 35.9%(전국 38.5%)로 평균 이하이며, 남학생(26.2%)보다 여학생(46.5%)의 칫솔질 실천율이 훨씬 높음
 - 서울(22.5%), 인천(26.0%), 부산(35.9%) 등 대도시 실천율이 극히 낮음
- ' 19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 전국 중학교 40.2% < 고등학교 44.9%
 - 중학교 1학년의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이 36.3%로 높으며, 이후에도 고등학교 3학년의 46.2%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속 증가 추세
 - 부산지역 중고등학교는 39.6%(전국 42.7%)로 평균 이하이며, 남학생(33.9%)보다 여학생(45.8%)의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이 더 높음
 - 울산(38.3%), 부산(39.6%)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임

⇒ 초등학교 구강검진사업을 부산시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시행한 효과로 분석

○ 학교 양치 전용시설 및 구강보건실 설치(보건소 지원)

구분		학교명
양치 전용시설	초등	당감초, 성서초, 성전초, 연학초, 송운초, 개금초, 동원초, 개화초, 동양초, 선암초, 가평초, 개림초(12교)
구강 보건실	초등	구남초, 개포초, 교리초, 기장초, 대청초, 모라초, 부전초, 부산진초, 서동초, 정관초, 장전초, 내성초, 신금초(13교)
	특수	부산맹학교, 부산솔빛학교(2교)

추진방향

- 식후 이 닦기(양치질) 생활화 지도 강화로 칫솔질 실천율 50% 이상 목표로 추진
 - 학교 내 이 닦기 시설 개선 보완을 통한 식후 이 닦기 생활화(습관화)
 - 기존학교: 화장실 양치시설 설치 확대 등 이 닦기 전용 수도시설 보완 · 확충 ⇒ 시설부서와 적극 협의
 - 신설학교: 이 닦기 전용 수도시설 설치 ⇒ 시설부서 추진
 - 칫솔보관함 설치 및 위생관리 철저
 - 이 닦기 실천 및 캠페인(포어, 포스터, 글짓기 등) 실시: 보건의 날(4월7일), 구강 보건의 날(6월9일) 등
-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 목적: 초등학생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으로 치아의 유기질이 많아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높아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에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대상: 희망하는 학교
 - 약품지원: 보건복지부
 - 실시방법: 0.2% 불소용액으로 매주 1회 양치(입가심)
 - 협조사항: 관할 보건소에 불소양치 대상, 구강보건교육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시범 설치하고, 보

건소의 지원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의 예방과 진료 등 실시

- 설치·운영학교: 15개교

- 운영내용

· 학교내 구강보건실(치과용 진료대, 장비, 기구 등) 설치

· 보건소 치과의사 주1~2회, 치과위생사 주5회 출장 진료

· 진료내용: 구강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유치발치, 칫솔질 교육, 개별 식이조절, 구강보건교육 등

○ 초등학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부산시 사업)」 협조

- 부산시 예산(5억원- 시비 50%, 구비 50%)으로 2021년 지속 추진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약 11,000명(대상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 예방진료(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석 제거 등) 등

- 지원단가: 기본 진료비(40,000원/1인)

-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구·군, 보건소 등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 대상학생 신청 및 참여 동의 후 치과 방문하지 않는 아동(학부모) 참여 독려

※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 대상이므로 '20년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연기한 경우라도 '21년에 2회가 아닌 1회만 실시

기본방침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현황

- 학교장은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추진방향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교)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 보급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 (교육청) 소아당뇨 재학 학교 보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영상자료 제작 보급

기본방침

-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기존의 교육부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시도별로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 마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현황

-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학생 건강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생활패턴으로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건강증진학교의 특징 >

구분	특징
학교정책	교사, 학생의 참여하에 합의된 정책 결정(상향식 의사결정)
보건교육	지식, 태도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역 사회(외부기관) 연계	외부기관이 학교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학교 중심)

- 교육부 주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 '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12~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85개교 운영)
 -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위한 시도지정 연구학교 운영('15년 14교, '16~17년 20교)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 '18년 2교(청학초,부산진중),'19년 3교(연제초,삼성중,반여고)
 - '20년, 시도교육청의 건의에 따라 '건강증진학교' 시도교육청 이양됨.
 - '20년, 그간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성과 및 모델 등 정리 후 각 학교로 안내

추진방향

-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단위 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변학교로 건강증진학교를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각급 학교는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보건소,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학교 관련 커리큘럼 포함(교육부 차원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예정)
 -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16년~)
- 건강증진학교 운영 방식에 따른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보급
 - 학교에서 건강증진학교 운영 모형을 적용하여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
 - 우수사례 운영 학교·담당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상 등 시상 예정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

- 워크숍, 연구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운영 우수사례 공유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 건강증진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에서 통합적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학생건강증진 활성화
- 신·박·한 on (앱과 웹) 프로그램²⁾ 개발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향상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부산건강학생의 ‘Trademark’로서의 안착
- 학교주도의 학생건강시스템 구축 및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습관 형성
- 2021학년도 연구학교 1교 운영: 용수초
- 연구학교 운영성과 자료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일반화로 건강증진 능력 향상

2) 부산건강학생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신체’, ‘내 몸의 박자’, ‘균형 있는 한 끼’, on」의 약자

기본방침

- 초등학교 학생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및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현황

- 2015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알레르기 유병율 전수조사 실시
 - 서부산권 증상 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2017년~2018년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구축 시범학교 운영
 - 시범학교 운영수 : 12개교

구 별	학 교 명	학교수
사하구	감천초, 신남초, 옥천초	3
서 구	대신초, 송도초, 토성초, 화랑초	4
영도구	동삼초, 봉삼초, 중리초, 청학초, 태종대초	5

- 2020년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현황: 26교(초22, 중1, 고2, 특수1)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교

추진방향

- 2019년부터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전체 초등학교 확대 시행
-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연수 실시
-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아토피·천식 질환 학생 선별, 교육지원청 예방 물품(보습제, 마스크 등) 지원

- 부산광역시 연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의 주요 활동
 -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학생 선별 및 관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 교사, 환아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상담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자료 배포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2021 안심학교 선정 : 추후 부산광역시 연계 공문 발송하여 희망학교 선정
 - 안심학교 운영 지원 및 관리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각 구·군 보건소
-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생 대상 동영상 교육 연 1회이상 실시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평가: 2021. 12월
-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행

기본방침

- 우리교육청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
-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학생들 중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원
- 난치병 학생과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나눔 문화 확산 실현

난치병 학생현황

(2020년 4월기준)

구분	백혈병	심장병	암 (종양)	뇌종양	근이양증	혈우병	재생불량 성빈혈	기타	계
학생수	60	156	48	37	34	17	10	401	763

※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누락된 학생이 있을 수 있음

지원실적

(단위 : 천원, 명)

구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모금액	203,592	183,998	344,660	345,804	243,676	214,654	235,370	237,693
지원액	196,400	173,970	270,432	263,500	257,100	136,000	294,500	191,000
지원인원	75	68	93	103	88	88	69	60
구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
모금액	240,186	216,957	288,864	221,937	132,143	87,303	114,541	3,311,378
지원액	240,000	187,500	137,500	172,000	161,500	188,800	227,500	3,097,702
지원인원	76	57	45	56	55	66	91	1,090

추진방향

- 난치병 학생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날개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 2021년도 성금모금 운동 전개
 - 모금기간 : 연중
 - 대상 :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 성금모금 방법

사랑의 날개 (봉투모금함)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대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모금기간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중점기간 : 2021. 3.~6. 30 • 2차 중점기간 : 2021. 7.~11. 30 - 모금방법 : 봉투모금함을 활용한 모금 * 세부계획 추후 통보
사랑의 날개(후원) 보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기간 : 연중 - 모금대상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직원 및 학교별 학생, 교직원, 기타 관공서, 기업체 임직원 및 시민 등 - 모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S 신청 : 매월 일정액(1구좌당 5천원 - 희망하는 구좌 자율 신청)을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으로 정기계좌이체(CMS) • 사랑의 계좌기부 :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 및 법인 등 누구나 • ARS 전화 걸기 : (☎ 060-700-1050) 전화 1통화당 2,000원
※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01-000144-1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농 협 919-01-215783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국민은행 107201-04-089167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 “사랑의 날개달기”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 세부계획 별도 시행

기본방침

- 학교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현황

- 부산시내 각 구·군 보건소의 2021 학생 건강증진 사업 현황 [참고자료 9]
 - 비만예방, 금연·금주교육, 구강보건, 영양교육, 아토피 예방 등

추진방향

- 각급학교에서는 지역보건소 학생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개선

목적

-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 현황과 수준 파악
-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

조사개요

- 조사대상: 중1~고3학년(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 조사내용: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행태, 아토피·천식, 인터넷 중독, 기타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익명성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주관: 질병관리본부(세부계획 추후 통보)



보고 목록

번호	제 출 사 항	제출기한	제출대상	비고
1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 학교 : '21. 12. 17. · 교육지원청 : '21. 12. 31.	전체학교	p.43
2	성교육 실시 현황	· 학교 : '21. 12. 17. · 교육지원청 : '21. 12. 31.	전체학교	p.44
3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 학교 : '21 5. 6. · 교육지원청 : '21 5. 13.	전체학교	p.45
4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학교 : '21. 7. 30. · 교육지원청 : '21. 8. 13.	전체학교	p.46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 학교 : '22. 1. 14. · 교육지원청 : '22. 1. 24.	전체학교	p.47
6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연중(수시)	전체학교	p.48
7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 학교 : '21. 5. 6. · 교육지원청 : '20. 5. 12	전체학교	p.50
8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 학교 : '21. 12. 17. · 교육지원청 : '21. 12. 31.	전체학교	p.53

* 제출처 : 각급학교 → 해당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 (엑셀서식 보고)

○○○교육지원청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 분	학교 급별	학교수	학년단위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학교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보건교사 배치학교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소계							
계									

- *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 교사의 수업시수가 아닌, **학급 기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연평균 보건수업 시수**
- * 학년단위 16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1개 학년 이상 연간 16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 * 제출기한 '21. 12. 17.(당해 학년도 내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 **수업시수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수를 작성하되, 보건교사 미배치학교는 겸무발령 등 인근학교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보건교육에 한하여 기재**

2. '보건', '성교육' 과목 선택교과 현황

구분	중학교(A)		고등학교(B)		특수학교(C)		계(A+B+C)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보건								
성교육								

- *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수
- * '성교육' 과목은 중학교 '성과 건강', 고등학교 '인간과 성' 선택과목을 말함
- * 제출기한 '21. 12. 17.



성교육 실시 현황(엑셀서식 보고)

1. 성교육 담당자 지정 현황 및 계획수립 유무

학급 급별	전체 학교수	과목별 담당교사 유무 (1개교 당 중복표시가능)						학교 성교육 계획수립 유무		
		보건	체육	기술· 가정	초등 교육	기타	계	수립	미수립	학교교육 계획서에 포함
초										
중										
고										
계										

* 성교육 담당교사 유무

- 성교육 담당교사란, 업무분장표에 '성교육'으로 명시되어 실제 성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 담당교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전공과목에 기재(초등교사는 초등교육에 기재)
- 담당교사 숫자를 기재하지 말고, 유무 여부를 기재

*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유무

- 전체학교수(시도교육청 내 총 학교수)= 수립+미수립
- '교육계획서 포함'은 '수립'에 기입한 학교 중 성교육계획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재

2. 성교육 실시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 성교육 실시 해당기간: 당해 학년도

* 학년별 시수 = 해당 학년 성교육 실시 총시수 ÷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수

3. 성교육관련 교원 연수 개설 현황(시도교육청만 작성)

시도교육청명	이수시간별 직무연수 개설 과정 수			합계	기타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60미만	60시간 이상		

* 기타 : 타 연수과정에 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연수과정 수, '합계'에는 미포함

* 제출기한 '21. 12. 17.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학교보건실 설치현황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보건실 면적(66㎡이상) 충족 현황		보건실 설치 학교수		
		충족 학교수	미충족 학교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다른 교실과 병용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 * '21. 4. 1. 기준 현황
- * 미충족 학교별 면적 현황 제출

2. 학교보건실 설비·기구 충족 현황

구분		초	중	고	특수	계
전체학교수						
필수항목	충족학교수					
	충족율					
권장항목	충족학교수					
	충족율					
계						

*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참조

3. 학교보건교육실 설치현황 (단위 : 교)

구분	보건교육실 설치 학교수				보건교육실 미설치 학교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보건실과 병용	기타 다른 교실과 병용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 '21. 4. 1. 기준 현황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정 상 (%)	남자	()	()	()	()	()
		여자	()	()	()	()	()
	과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비 만 (%)	남자	()	()	()	()	()	
	여자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교육지원청

1. 초·1·2·4·5학년, 중·고 1·2학년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교수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					
합 계							

2. 초등학교 3, 6학년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3학년					
6학년					
합 계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소 계									
중학교	3학년									
	소 계									
고등학교	3학년									
	소 계									
합 계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최초/최종] 보고

<21. 00. 00.(0) 00교육지원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 수	교직원 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학교	○○구	00	00	○○학교	김○○/000-0000	이○○/000-0000	결핵환자 동일인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학교명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 수)*			
○○초	2021.00.00.	결핵	1	학생	0-0(00명)	2021.00.00.	2021.00.00. (○○구보건소)	0월 중순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역학조사 결과보고(※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학교명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초	2021.00.00.	최초	학생	0-0반 00명	00명	결핵0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1차 X-ray 촬영함
○○초	2021.00.00	최초	교사	0-0반 수업 교사	00명	결핵0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수업교사 1차 X-ray 촬영함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1.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교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1.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참고자료 목록

[자료 1]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제도개선 방안.....	55
[자료 2]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설비 기준.....	57
[자료 3]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61
[자료 4]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62
[자료 5]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106
[자료 6] 학교 감염병 발생시 교육지원청 대응요령.....	107
[자료 7] 학교 감염병 발생시 나이스 보고 요령.....	108
[자료 8]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109
[자료 9] 부산관내 보건소의 2021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110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제도개선 방안

1.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2020-601호

2. 제도개선 방안(학교 내 건강증진방향에 반드시 명시)

가. 아동청소년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금지

- 금연구역인 아동청소년 시설에는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가 금연정책 강화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안(개정 추진 중)

현행	개선(예시)
<p>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 ----- ----- 이 경우 6·9·10·12호를 제외한 각 호에 대해서 ----- ----- ----- -----</p>

* 위의 6.9.10.12호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각종학교포함,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임.

다. 학생 흡연피해 방지 및 학교보건 정책상 학교시설에 흡연실 설치는 제한됨을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

라. 학교 등에서 흡연 시 관할 지자체 조치요구 강화

- 학교, 유치원 교육시설 종사자 및 외부인 대상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학생 건강권 보호정책 실효성 강화

○ 시설 운영자는 누구든지 흡연 위반 확인 시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금연지도, 과태료부과)를 이행할 수 있게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마련 및 사전 안내 실시

-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조치방안 (예시)

외부인 통학로 등 금연구역 내에서 일반인 또는 방문객 등 외부인의 흡연위반 모습이 확인되면 시설관계자(학교장, 교직원, 배움터지킴이 등)는 적절한 법적 조치(금연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주기적 순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함.

종사자 학교장 등 시설운영자는 시설 내외 금연구역에서 교직원 등 내부 종사자의 흡연위반행위가 확인(자체 점검, 민원, 신고불문)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 조치(금연지도, 과태료부과 등)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흡연위반 당사자가 그면전문교육기관의 금연 클리닉 등 외부 운영 금연프로그램 이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권고

사전안내 종사자·외부인 등에게 강화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침에 대해 시설 운영자는 사전 안내(학부모대상 협조 안내문 포함 등)를 실시하여 금연구역 내 불법 흡연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행정조치 시 당사자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원응대 외부인 또는 종사자가 관할 지자체 통보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주변의 위해환경을 차단할 의무가 있는 교육시설 운영자의 당연한 책무이며 불법 흡연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로서 공직자는 같은 법 제 7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함.

마. 간접흡연 피해제도개선 방안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설·설비 기준

▶ 시설·구조

번호	시설·설비 등	용도 및 시설·설비 시 유의사항
1	침대	1인용 침대 필요수 만큼 확보한다.
2	실간 구분시설	각 실간 구분은 천장 높이 2/3정도로 하여 냉·난방 및 통풍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안정실 남녀 구분 파티션	두꺼운 재질로 남·여 안정실을 구분하고, 통풍과 채광을 위해 위쪽은 창문을 만들어서 필요시 열 수 있도록 한다.
4	안정실의 경계	파티션 벽의 빈 공간을 이용해 게시판을 설치한다.
5	안정실 출입문	파티션 색과 어울리게 설치하고, 윗부분의 모서리를 직사각형 보다는 둥글게 한다.
6	불박이장	진공청소기 및 청소도구, 신체검사 도구, 보관용 침구세트 등 기타 물품을 보관한다.
7	상담실	원탁과 편안한 개인용 의자를 비치한다. TV·VTR을 함께 비치하고 의자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화면 크기
8	상담실의 파티션	너무 높지 않게 하여 분리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에어컨	냉방 시 보건실 전체적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대각선으로 비치
10	관리실 책상	미니 스테이션으로 너무 높지 않도록 하며,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 “ㄴ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비치한다.
11	관리·처치실의 수납장	약품 및 건강기록부, 보건교육자료 등의 물품 보관을 위한 잠금 장치, 냉장고, 자외선소독기, 멸균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
12	냉장고	냉동장치가 가능한 냉장고로, 수납장 사이의 공간에 넣는다.
13	자외선 켄,소독기, 의료기구 멸균기	수납장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함께 넣을 수 있도록 하여 단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14	드레싱 카	바퀴가 있으므로 필요시 진찰대로 이동시켜 치료 가능토록 한다.
15	처치용 의자	치료자와 환자용 의자를 두어 앉아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치료한다.
16	핸드 드라이어 또는 핸드 타월	수건은 감염병 유행시 위험하므로 핸드 드라이어 또는 핸드 타월 설치
17	세면대 및 세족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 중 더러운 손이나 발을 바로 씻을 수 있도록 출입문 가까이 설치한다.
18	창문	버티컬 또는 커튼을 설치한다.

▶ 학교 보건실 내부환경

구분	구조 및 설비 내역	비고
천장 및 벽면	쾌적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파스텔톤의 도색 또는 도배지 사용	도색 후 코팅으로 처리
바닥	모노륨, 우드륨, 데코타일 깔기 (위생적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 선정)	보건실내 전용 실내화 사용
침대보, 이불 등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트, 이불, 베개 등 비치	어두운 색 지양
창문	시대적 감각에 맞는 파스텔톤의 블라인드나 버티칼 사용 및 방충망 설치	복도측 창문에도 설치
각실의 구획설정	항상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치 밝고 온화한 파스텔 톤의 파티션 설치 시화, 명화 등 그림액자 게시 남·여 공학의 경우 안정실 구분	칸막이 높이는 바닥에서 1.5미터 정도 유지 파란 나일론 가리개 사용 지양
보건·의료용품	자외선소독기 충분한 약품 및 수납장, 침대 보유 드레싱카 비치 신체검사 기구(비만도측정기, 좌고계, 아크릴 시력표), 온·습도계 비치 냉장고, 독극물 보관장 계절에 맞는 온화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위생복 착용	- 보건실 규모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적정량 구비 - 위생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 구분
시설·설비	수도시설(손·발 구분 설치) 원탁 응접세트(상담용) 공문서, 약품 및 건강기록부 등 수납장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대기용 의자	종합보관장 설치
냉·난방 시설	공해가 없는 냉·난방 설비 구비	동·하절기 적정온도 유지
실내조명	보건실 위치에 적당한 조명 설치 - 어두운 곳은 할로겐 등 설치 안정실은 조도 조절장치 별도설치	
벽면 게시물	월별 학교보건사업추진내용, 응급처치 그림 자료, 보건활동 자료 (사진자료 등) 보건(봉사)반 운영 계획 월별, 증세별 보건실 이용자 현황 통계 신체검사 결과 통계 및 비교표	
건강소식 홍보판	계절별 건강관련자료, 보건시사자료 등 병리검사, 신체검사 등 이달의 보건행사 및 보건관련 소식 등	복도벽면 게시판 이용

▶ 게시물 안내

구 분	분야별	자료내용
보건실	보건소식코너	이달의 건강주의보 유행되는 질병(전염병 등)의 특성 및 예방요령을 중심으로 게시
	구강관리 (치아사랑)	충치의 원인, 치아관리법
	비만관리	비만원인, 운동 및 식이요법
	시력관리	눈의 구조, 운동 등 시력예방법
	흡연예방교육	흡연의 폐해, 질병 및 포스터 등을 게시
	모형 등	인체해부도, 스모키인형, 자궁모형, 파일, 비디오 등
보건교육실	성교육코너	성교육자료(게시자료, 파일자료), 성교육 모형
	약물오·남용	약물·흡연예방코너 등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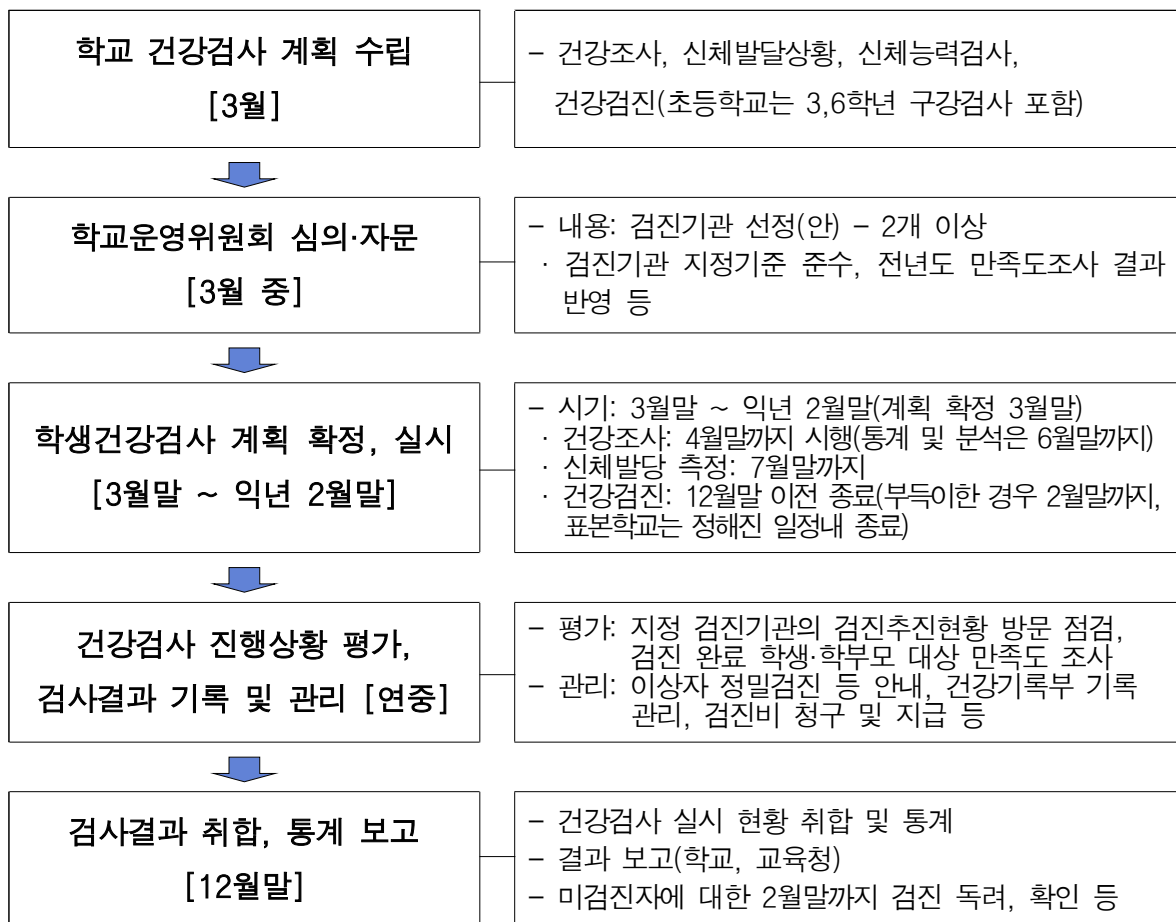
2021 학교 건강검사 실시요령

1. 근거

- 「학교보건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2. 학교 건강검사 추진절차

[학교 건강검사 추진절차(흐름도)]



3. 학교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4. 건강검사 실시기준

가. 신체의 발달상황

- 1) 검사시기: 1학기 중(7월 말까지)
- 2) 검사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포함) 전교생
- 3) 검사종목: 키(cm), 몸무게(kg), 비만도
- 4)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 5) 검사자: 학교장(단, 상반기 건강검진을 실시한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은 검진기관의 자료 활용 가능)
- 6) 결과처리
 - 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 【별표 2】
 - 나) 동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021. 10. 15.(금)까지 보고 【별표 3】

나. 건강조사

- 1) 조사시기 : 4월 중
- 2)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전교생
 - * 건강검진 대상 학생도 학교에서 건강조사 실시
- 3) 조사항목 및 내용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제2항 【별표 4】

- 4) 조사자 : 학교장
- 5)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초등학교 **【별표 5】**, 중·고등학교 **【별표 6】** 에 의거 실시
 - ※ 유의사항 : 건강조사용 설문지는 학교 자체에서 인쇄하여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6) 조사결과 처리 : 상반기 중 설문결과 통계작성 및 결과 분석 후 학교 보건 관리에 반영

다. 건강검진

☞ 유치원 건강검진은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사업’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시행

- 1) 검진시기 : 연중(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완료)
- 2) 검진대상 : 초등학교 1, 4학년(다만, 구강검진은 전체학년에 대하여 실시), 중·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초1·4학년 및 중·고 1학년), 평생교육시설학교 고1 과정
- 3) 검진항목 및 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실시하며, 검사대상자인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함 **【별표 7】** 참조
- 4) 2020년 학생 건강검진 비용 및 산출기준 : **【별표 8】**, **【별표 8-1】** 참조
 -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적용
- 5) 검진기관 선정
 - 가) 대상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일반 및 구강검진)
 - 나) 검진기관 지정기준 : **【별표 9】**, **【별표 9-1, 9-2】** 참조

【 건강검진 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검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 → 건강정보 건강in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 주소(부산시, 구/군 선택) → 검색

다) 검진기관수 :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라)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검진 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과		1개	2개

※ 위 표상의 검진기관 수는 최소한의 숫자 임

※ 검진기관은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 1 :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는 선정하지 않아도 됨

▶ 사례 2 :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로 선정

▶ 사례 3 :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 하여야 함.

마) 선정방법 : 반드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6) 건강검진 실시방법

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학교지정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나) 학교장은 지정 검진기관에 당해 학교의 검진대상자 명부를 작성, 전산 출력물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 확인 대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당해 검진기관과 계약된 학교의 학생여부와 해당학년의 검사항목을 확인하여 비 대상자가 검진을 받거나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을 검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라)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1·2·4·5학년 → **별표 10** , 중교 1·2학년 → **별표 11**]

마)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관련 검사 및 관독은 당해 검진기관의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검진기관은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혈액 채혈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한다.

사) 구강검진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초등학교 1,2,4,5학년 및 중교 1,2학년: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실시

(2) 초등학교 3, 6학년(특수학교 해당학년 포함): 학교에서 지정한 구강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실시(다만, 출장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진 실시)

(3) 구강검진 실시방법

(가) 구강검진 문진표는 **별표 12** 참조

(나) 지정된 의과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에서 실시

(다)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없어 별도로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검진기관과 별도로 구강검진기관과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의과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기관을 계약한 후 학교에서 의과검진기관만을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금지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결과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0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검진기관인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구강검진기관인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와 계약을 하여 고용할 수 없음.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④항)

-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7)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가) 검진항목 및 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에 따른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

나) 검진결과 판정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 **【별표 13】** 참조

(2) 검진기관의 검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별표 13-1】**의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를 참조한다.

다) 검진결과 기재방법

(1)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의사 및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검진결과 기재

(가)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별표 14】**'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나)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8) 건강검진결과 통보

가)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별표 15】**'와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별표 16】**'를 각각 작성하여 통보한다.

나)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존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다) 이 경우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이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검진담당의사가 서명 후 문진표를 첨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마)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 【별표 17】’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바)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진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하여야 한다.
- 사)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 중수검을 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아) 학교장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건강 이상 및 정밀검사를 요함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진여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건강이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구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들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한다.
- 자)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한다.

라. 별도검사

1) 소변검사

- 가) 시기 : 3월~9월(학교별 일정 : 추후 통보)
- 나) 방법 : 검사기관(한국학교보건협회부산지부)에서 채뇨통을 준비하여 학교에 배부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채뇨 → 검사기관에서 회수 및 검사
- 다) 대상 : 초,중,고 전체학년(다만, 건강검진 대상 초1,2,4,5, 중고1,2은 제외)
- 라) 검사항목 : 단백질, 잠혈
- 마) 비용 : 740원/1인당 (전액 학교회계 부담)
- 바) 결과보고 : 검진기관에서 시교육청으로 제출

2) 결핵검사

- 가) 시기 : 3월~10월(학교별 일정 : 추후 통보)
- 나) 방법 : 검진기관인 대한결핵협회부산시지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
- 다)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라) 비용 : 3,310원/1인당 (전액 학교회계 부담)
- 마) 결과보고 : 검진기관에서 시교육청으로 제출

3) 시력검사

- 가) 시기 : 3월~10월(학교일정에 따라 시행)
- 나) 방법 : 학교의 장이 연 1회 실시
- 다) 대상 : 초,중,고 전체학년(단, 건강검진 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은 제외)

5.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실시

- 가.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나.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학부모 불편사항 또는 검진기관 이용 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진기관에 개선조치 요청(공문요청)토록 하고, 자체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조치하는 등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다.

다. 학교장이 검진기관에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평가 등과 관련하여 개선여부를 현장확인 하도록 한다.

6. 검진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

가. 검진비용 청구

- 1)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은 【별표 8】에 의한다.
-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비용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결과를 근거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3)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건강검진 비용청구서에 기재된 실시인원과 학교에 통보한 건강검사결과통보서 인원과 일치하여야 한다.
- 4) 검진기관은 검사항목 중 비만학생 혈액검사와 고등학교 여학생 혈색소 검사와 결핵검사의 검사방법을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5) 자체 구강검사 실시 검진기관의 경우 구강검진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한다.
- 6) 자체 구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구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구강검진 계약당사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나.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 및 심사

- 1)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명단, 검진항목, 검진결과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2)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정산 또는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 정산기준 【별표 18】’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검진기관에 정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검진비용 지급

- 1)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검진비용은 반드시 당해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보건기관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기타 학교 및 검진기관의 유의사항

가. 학 교

- 1) 건강검진은 학생이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연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학교 건강검진 제도 홍보를 통해 검진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최소화 노력
- 2) 학교장 지정 검진기관 선정 관련 점검 등 유의사항
 - 검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류인 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건강검사결과 통보서(구강검진 포함), 검진안내서, 의료 인력의 자격 및 채용관계 증명 서류, 검진장비의 검사성적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등 사전 점검
 -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과정의 지도감독 용이성, 안전사고 예방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진기관을 선정
 - 신속한 검진 실시와 관련한 제반 협조사항 점검
 - 검진 당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 실시
 - 방문 검진 가능일 및 시간 안내, 기타 협조사항 등
- 3)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학교장에게 통보된 검사 결과통보서는 받은 즉시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괄처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
 -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건강이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담임교사에게 결과를 알려 수업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며,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등이 연계하여 건강지도 철저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의 정밀검진 시 2차 검진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진비는 학부모가 부담함을 안내

- 2차 검진결과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상담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 등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
- 4)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서’ 직접 징구 [관련공문 : 교육재정과-2020, 2014.2.7. 입찰 및 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시행계획 알림]
 - 계약관련 서류는 간소화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함
 - ※ 계약서 간소화 예시자료 **【별표 19】**
- 5)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
 - ※ 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 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사례 금지
- 6)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구강)검사결과통보서 외의 통계자료 등 기타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 7) 건강검진 실시 안내
 - 학교장은 2021년도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비롯한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안내)을 실시하되, 특히 종전과 달라진 사항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홍보한다.
 -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안내 시 포함할 내용

-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
- 검진대상자가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할 경우 검진결과통보서 발급이 되지 않을 시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포함)
- 검진 당일 주의사항, 지참 서류, 지정 검진기관명 등

나. 검진기관

- 1) 문진표 **【별표 10, 11】** , 구강검진문진표 **【별표 12】** 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 받아 검진 실시

- 2)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 주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에 사전 안내하여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3)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편의를 위해 방학이나 토·공휴일에도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토록 하고,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구강검진 포함) 제출 등 검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
- 4)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 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 5)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6) 학교장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7)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함.
- 8)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kg/m ²)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붙임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남자)
 1-2 체질량지수 백분위수(여자)

[별표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남자)

연령(년)	연령(개월)	저체중종료	과체중시작	비만시작
5.0	60	13.9 Kg / m ²	17.4 Kg / m ²	18.3 Kg / m ²
6.0	72	13.8 Kg / m ²	17.6 Kg / m ²	18.8 Kg / m ²
7.0	84	13.9 Kg / m ²	18.3 Kg / m ²	19.6 Kg / m ²
8.0	96	14.1 Kg / m ²	19.2 Kg / m ²	20.7 Kg / m ²
9.0	108	14.3 Kg / m ²	20.2 Kg / m ²	22.0 Kg / m ²
10.0	120	14.6 Kg / m ²	21.2 Kg / m ²	23.1 Kg / m ²
11.0	132	15.0 Kg / m ²	22.2 Kg / m ²	24.2 Kg / m ²
12.0	144	15.4 Kg / m ²	23.0 Kg / m ²	25.1 Kg / m ²
13.0	156	15.9 Kg / m ²	23.6 Kg / m ²	25.7 Kg / m ²
14.0	168	16.4 Kg / m ²	23.9 Kg / m ²	26.0 Kg / m ²
15.0	180	16.9 Kg / m ²	24.2 Kg / m ²	26.2 Kg / m ²
16.0	192	17.4 Kg / m ²	24.5 Kg / m ²	26.4 Kg / m ²
17.0	204	17.8 Kg / m ²	24.8 Kg / m ²	26.6 Kg / m ²
18.0	216	18.2 Kg / m ²	25.1 Kg / m ²	26.9 Kg / m ²

[별표 1-2]

체질량지수 백분위수(여자)

연령(년)	연령(개월)	저체중종료	과체중시작	비만시작
5.0	60	13.6 Kg / m ²	17.2 Kg / m ²	18.2 Kg / m ²
6.0	72	13.6 Kg / m ²	17.5 Kg / m ²	18.7 Kg / m ²
7.0	84	13.6 Kg / m ²	18.1 Kg / m ²	19.5 Kg / m ²
8.0	96	13.7 Kg / m ²	18.8 Kg / m ²	20.4 Kg / m ²
9.0	108	14.0 Kg / m ²	19.7 Kg / m ²	21.5 Kg / m ²
10.0	120	14.3 Kg / m ²	20.6 Kg / m ²	22.4 Kg / m ²
11.0	132	14.7 Kg / m ²	21.4 Kg / m ²	23.3 Kg / m ²
12.0	144	15.2 Kg / m ²	22.1 Kg / m ²	24.1 Kg / m ²
13.0	156	15.8 Kg / m ²	22.8 Kg / m ²	24.8 Kg / m ²
14.0	168	16.3 Kg / m ²	23.3 Kg / m ²	25.2 Kg / m ²
15.0	180	16.8 Kg / m ²	23.6 Kg / m ²	25.4 Kg / m ²
16.0	192	17.2 Kg / m ²	23.8 Kg / m ²	25.5 Kg / m ²
17.0	204	17.4 Kg / m ²	23.8 Kg / m ²	25.5 Kg / m ²
18.0	216	17.5 Kg / m ²	23.7 Kg / m ²	25.5 Kg / m ²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cm)												
몸 무게(kg)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복오래달리기	회										
오래달리가건기 (초5~고3)	1,000m(초)	분:초	공란								
	1,600m(중·고/남)	분:초	공란								
	1,200m(중·고/여)	분:초	공란								
스텝검사	PEI	공란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합유연성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점	공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약력	kg										
50m달리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지방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검진	검진일	공란			공란				
구강검진	검진기관	공란			공란				
구강검진	검진일								
구강검진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사일									
검사명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표 3]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정 상 (%)	남자	()	()	()	()	()
		여자	()	()	()	()	()
	과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비 만 (%)	남자	()	()	()	()	()	
	여자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 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4]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 관련)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병력	가. 감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への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への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2. 조사방법 : ‘별표5~별표6’ 설문지로 조사

[별표 5] 건강조사 설문지(초)

<p>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안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p>		<p>학교</p>	
<p>1. 최근 1년간 진염병 예방 접종을 받은 내용은 써 주십시오.</p>	<p>점종명</p>	<p>점종일자</p>	<p>점종기관</p>	<p>학 교 명</p>	<p>학 교</p>
<p>2. 가족 중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p>	<p>질환명</p>	<p>나와의 관계</p>	<p>나와의 관계</p>	<p>학년/ 반/ 번호</p>	<p>학 년</p>
<p>3.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p>	<p>질환의 과거력</p>	<p>있음</p>	<p>질병명</p>	<p>성 명</p>	<p>내 용</p>
<p>소화기계</p>	<p>위염, 소화성궤양</p>	<p>있음</p>	<p>질병명</p>	<p>학 교</p>	<p>내 용</p>
<p>호흡기계</p>	<p>변비 장염 천식 축농증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핀도선비대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늑막, 사시, 소아백내장 등 중이염 정력장애</p>	<p>있음</p>	<p>질병명</p>	<p>학 교</p>	<p>내 용</p>
<p>눈·귀</p>	<p>이도피 피부병</p>	<p>있음</p>	<p>질병명</p>	<p>학 교</p>	<p>내 용</p>
<p>피부</p>	<p>그 밖의 귀 질환(이명 등)</p>	<p>있음</p>	<p>질병명</p>	<p>학 교</p>	<p>내 용</p>
<p>순환기계</p>	<p>그 밖의 피부질환 신진성심장질환(어려서부터)</p>	<p>있음</p>	<p>질병명</p>	<p>학 교</p>	<p>내 용</p>
<p>근골격계</p>	<p>척추측만증 디스크나 요통 사지 운동의 장애 외상이나 사고 소아정신과 질환 약물 알레르기 소아당뇨병</p>	<p>있음</p>	<p>질병명</p>	<p>학 교</p>	<p>내 용</p>
<p>그 밖의 질환 등</p>	<p>질핵 경련이나 발작(경기) 언어장애나 발달장애 간염 수술·입원 경험(어려서부터) 그 밖의 질환(중독, 패혈증, 홍역, 수두 등 포함)</p>	<p>있음</p>	<p>질병명</p>	<p>학 교</p>	<p>내 용</p>

<p>건강조사 설문지 (초등학생용)</p>		<p>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안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p>	
<p>항목</p>	<p>내 용</p>	<p>예</p>	<p>아니오</p>
<p>식생활 / 비만</p>	<p>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락토스 요거트를 먹는다. 평소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먹는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만 주로 먹고, 편식이 심하다. 밀가루·유제품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개인 위생 관리</p>	<p>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빨 닦는다.</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신체 활동 & 수면</p>	<p>주 3회 이상 뛰어나거나 숨이 잘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체중을 유지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하고 있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학교 생활 & 가정 생활</p>	<p>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거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우리 가족은 나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 준다. 텔레비전은 매일 2시간 이상 본다.</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TV, 인터넷</p>	<p>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안전 의식</p>	<p>자전거, 롤리보, 스케이팅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협박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학교 폭력</p>	<p>학교 내에서 우유나 물줄(책, 운동)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인적 사항</p>	<p>학 교 명</p>	<p>학 교</p>
<p>항목</p>	<p>내 용</p>	<p>예</p>
<p>흡연 유무</p>	<p>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파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잘 안오는 약이나 잘 오는 약, 살 때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p>	<p><input type="checkbox"/></p>
<p>사회성 / 정신 건강</p>	<p>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감기에 잘 걸린다. 은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된다. 실사를 자주 한다. 코피를 자주 흘린다.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핏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동이 나온다. 어린적 부터 앓고 있는 난치성 질환이 있다.(천식, 아토피, 심장질환, 백혈병, 암, 당뇨, 기타)</p>	<p><input type="checkbox"/></p>
<p>기타 건강 문제</p>	<p>담임선생님과의 개별 상담을 원한다. 보건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과의 개별 상담을 원한다. (학교 계약란)</p>	<p><input type="checkbox"/></p>

[별표 6] 건강조사 설문지(중고)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명	
항목		내용	예
성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아니오
흡연 여부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약물		잠 안 오는 약이나 잠 오는 약, 살 빼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호기심에 본다·부랑가스·기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	
성		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유체직·정신적·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감기에 잘 걸린다.	
		은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된다.	
기타 건강문제		실사를 자주 한다.	
		코피를 자주 흘린다.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무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콧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이빨적 부터 앓고 있는 난치성 질환이 있다. (원적, 아토피, 심장질환, 백일해, 임, 당도, 기타)	
기타		담임선생님과의 개별 상담을 원한다.	
		보건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과 개별 상담을 원한다.	
		(학교 제공판)	

건강조사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내용	예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아니오
항목		내용	예
식생활 /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떠먹는 요거트를 먹는다. 평소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먹는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만 주로 먹고, 편식이 심하다. 정당음료·햄버거·피자 또는 과자를 거의 매일 먹는다. 체중 조절을 위해 굶거나 약을 먹는다. 식사 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빨 닦는다.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체중을 유지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하고 있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거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고민이 있거나 피로할 때 의논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지난 1년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텔레비전은 매일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자전거플라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가는 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헐뜯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지난 1년 동안) 학교 내에서 옷이나 볼펜(색, 옷, 돈) 등을 빼앗겨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개인 위생 관리			
신체 활동 & 수면			
학교 생활 & 가정 생활			
TV, 인터넷			
안전 의식			
학교 폭력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내용에 순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별명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명	집중일자	집중기관
1. 최근 1년간 진원병 명				
발견조를 받은 내용을 써 주십시오.				
2. 가족 중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3.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질병의 과거력	있음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변비			
	장염			
	췌장염			
	축농증			
호흡기계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원도진비대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분·귀	농명, 사시, 소아백내장 등			
	중이염			
	정박장애			
	그 밖의 귀 질환(이명 등)			
피부	아토피 피부염			
	그 밖의 피부질환			
순환기계	심전심장질환(어려서부터)			
	빈혈			
	최저측근중			
근골격계	디스크나 요통			
	사지 운동의 장애			
	외상이나 사고			
	소아정신과 질환			
	약물 알레르기			
	소아당뇨병			
	결핵			
그 밖의 질환 등	경련이나 발작(경기)			
	언어장애 나 발달장애			
	간염			
	수술·임원 경험(어려서부터)			
	그 밖의 질환(중독, 백일해, 홍역, 수두 등 포함)			

[별표 7]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 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붙임 : 7-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p style="text-align: center;"><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가. 시력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3. 귀	가. 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구강	가. 치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나. 구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나. 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 · ALT) - 고1 여학생 : 혈액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다. 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측정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측정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 둘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쉬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8]

2021년 학생 건강검진 비용 산출기초

항목	초 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 목병 - 피부병 - 키, 몸무게, 허리둘레, 비만도, 혈압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8,590	8,590	8,590	8,590	8,590	8,590	8,590	8,590	8,590	8,590	
구강 (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7,600	7,600	7,600	7,600	7,600	7,600	7,600	7,600	7,600	7,600	
병리검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740	740	740	740	740	740	740	740	740	
	혈액 -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LDL(계산값), 중성지방, AST, ALT) - 여학생(고1) : 혈액소	-	-	16,170	-	16,170	-	16,170		1,000	16,170 + 1,000
	결핵 (직촬)	(14"×14") (촬영및판독료+재료대)				7,980	7,980	7,980	7,980	7,980	7,980
		(14"×17") (촬영및판독료+재료대)				8,300	8,300	8,300	8,300	8,300	8,300
		CR or DR				6,620	6,620	6,620	6,620	6,620	6,620
		Full PACS				7,510	7,510	7,510	7,510	7,510	7,510
	계		16,930	16,930	33,100	(14"×14") 24,910	41,080	24,910	41,080	25,910	42,080
					(14"×17") 25,230	41,400	25,230	41,400	26,230	42,400	
					CR or DR 23,550	39,720	23,550	39,720	24,550	40,720	
					Full PACS 24,440	40,610	24,440	40,610	25,440	41,610	

※ 참고

- ①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준용
- ② 중·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함
- ③ 구강검진기관으로만 지정된 기관(치과의원 등)의 구강검진비도 동 기준 단가 적용

[별표8-1]

2021학생 건강검진 세부내역 및 단가 산출기준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18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 “별표 1,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구분	검사항목	검 사 방 법	검사비용 (원)	검사여부			
				초		중1	고1
				1년	4년		
①건강검진 상당료 및 행정비용 (공통)	1-1. 키(cm)	체격검사 요령에 의함	8,590	○	○	○	○
	1-2. 몸무게(kg)	체격검사 요령에 의함		○	○	○	○
	1-3. 비만도 측정	체질량지수(BMI)		○	○	○	○
	1-4. 척추	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	○	○
	1-5. 시력 측정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	○	○	○
	1-6.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	○	○
	1-7. 청력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	○	○	○
	1-8.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연(외이도염) 등 검사		○	○	○	○
	1-9. 콧병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	○
	1-10. 목병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등 검사		○	○	○	○
	1-11.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	○	○	○
	1-12.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	○
	1-13. 진찰 및 상담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	○	○	○
② 구강	2-1.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 검사	7,600	○	○	○	○
	2-2.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	○	○	○
③ 병리검사 등	3-1. 소변	시험지법(요단백, 잠혈)	740	○	○	○	○
	3-2. 혈액	3-2-1. 혈당(식전)	1,280(비만)	×	○	○	○
		3-2-2. 총콜레스테롤	1,510(비만)	×	○	○	○
		3-2-3. 고밀도지단백(HDL)	6,140(비만)	×	○	○	○
		3-2-4. 중성지방	3,620(비만)	×	○	○	○
		3-2-5. 저밀도지단백(LDL)	계산값(비만)	×	○	○	○
		3-2-6. AST(SGOT)	1,830(비만)	×	○	○	○
		3-2-7. ALT(SGPT)	1,790(비만)	×	○	○	○
		3-2-8. 혈액소	1,000(여고생)	×	×	×	○
	3-4. 결핵	흉부 X-선 직촬(14"X14")-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7,980	×	×	○	○
흉부 X-선 직촬(14"X17")-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8,300	×	×	○	○	
흉부 X-선 직촬(CR or DR)		6,620	×	×	○	○	
흉부 X-선 직촬(Full PACS)		7,510	×	×	○	○	
계	초1(공통) → 15종 16,930원 초4 → 일반학생 15종 16,930원, 비만학생 22종 33,100원 중1 → 일반학생 19종 23,550원 ~ 25,230원, 비만학생 26종 39,720원 ~ 41,400원 고1 → 남(일반) 19종 23,550원 ~ 25,230원, 남(비만) 26종 39,720원 ~ 41,400원 여(일반) 20종 24,550원 ~ 26,230원, 여(비만) 27종 40,720원 ~ 42,400원						

※ 참고

- ①소변검사 : 시험지법 검사비용은 '요단백' 1종에 대한 검사비이나, '잠혈' 과 '요당'검사 항목 추가
- ②결핵검사 :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DR은 디지털촬영장치를,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 ③중1, 고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일반 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현미경 사. 혈액화학검사기기 아. 혈액화학분석기 자. 방사선촬영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 및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한다.

- 비고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9-1]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별표 9-2]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 검진	가. 의사 :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및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구강 검진	가. 치과의사 :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별표 10]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그 밖의 증상	몸에 멍이 잘 든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1]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썹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순환기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투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허리·무릎 등이 쭈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별표 12]

구강검진 문진표

<p>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u>최근 1년 동안</u>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3. 치아가 쭈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u>치과의사 선생님께</u>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

[별표 13-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 속 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코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¹⁾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 · 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별표 14]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결골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이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계산값)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 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진 항목개선 연구. 교육부, 2016

[별표 15]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 년 / 반 / 번 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 년 월 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 당(식 전)		mg/dL	
	몸 무게		kg			총 콜레스테롤		mg/dL	
	비 만 도					고 밀 도 지 단 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 추						중 성 지 방		mg/dL	
눈	시 력 측 정	나 안	좌:	우:		저 밀 도 지 단 백 (LDL) 콜레스테롤			
		교 정	좌:	우:					
안 질 환						간 세 포 효 소		AST	U/L
귀	청 력		좌: 우:					ALT	
	귓 병					혈 색 소		g/dL	
콧 병						결 핵			
목 병					혈 압	수 축 기		mmHg	
피 부 병						이 완 기		mmHg	
소 변	요 단 백				허 리 둘 레		cm		
	요 잠 혈				그 밖 의 사 황				
진 찰 및 상 담	과 거 병 력								
	외 상 및 후 유 증								
일 반 상 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6]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 년 / 반 / 번 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총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치석 형성()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그 밖의 증상()	
총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①	없음	②	있음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 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①	없음	②	있음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 잉 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일	
치과의사	의사명	(인)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8]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 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입력 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남학생에게 혈색소 검사를 한 경우 - 초등학생 1학년에게 비만(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 - 비만이 아닌 학생에게 혈액검사를 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라. 지급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하게 검사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 검사성적 과 종합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견·조치사항 및 판정(종합판정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검진결과통보서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경우(특히 소견란 등에 한글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담당의사 날인 누락, 소견서 부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지급보류” 검사성적 재확인 시 까지 해당수검자의 검진비 전액 지급보류 후 시정완료 시 지급</p>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 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 속 균 종 (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쓰쯘가무시증 카. 렘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덩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학교 감염병 발생 시 교육지원청 대응 요령

◇ 결핵 ◇		◇ 기타 감염병 ◇	
<p>○ 교육지원청 역할(역학조사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교육부) ▶ 교육지원청 결핵관리 담당자는 역학조사 지원 및 대상 학교에 대한 조사 협조 유도 ▶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에 따른 임무 확인(협업 자세 등) 		<p>○ 교육지원청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 학교 ·역학조사 시 : “결핵 처리 절차”준용 (노로바이러스 : 2017년 모의훈련 준용)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조와 관할 보건소의 자문 획득 지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신고 유무 확인 ○ NEIS 보고 지도 ○ 환자 상태 확인(격리여부 등) 	NEIS 확인 (신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신고 유무 확인 ○ NEIS 보고 사항 확인 ○ 환자 현황 확인
학교 방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다음 날(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비 지원 / 방역물품 전달 ○ 보건소 역학조사 협조 당부 - 현장 지도점검 결과 복명 (참고자료 7) * 언론보도 시 적절한 대응 능력 확보 	학교 방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신고 접수) 다음 날(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비 지원 / 방역물품 전달 ○ 현장 지도점검(보건소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복명 (참고자료 7) * 언론보도 시 적절한 대응 능력 확보
1차 협의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참여(학교 협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 	추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증가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 시) 보건소의 지속적인 자문 획득 지도
보고 사항 제출(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지원 및 지도 내용 첨부 	감염병 환자 통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발생 환자 통계 정리
중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선 검사 또는 잠복결핵 검사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 확인 및 지도 - 검사결과 교육지원청에 유선 통보 당부 	<p>※ 각급학교 방역물품 확보 권장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온계 : 교실 당 1개 + 보건실용(2~3개) ② 의료용 장갑 : 보건실용(학급수 × 5개) ③ 일회용 마스크 : 교실 당 20개 + 보건실용(학생 10명당 3개) ④ 기타(필요 시) : 손소독제, N-95마스크, 눈보호대(안대) 등 	
보고 사항 제출(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보고 	<p>※ 방역 실시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9월(1회이상 / 2개월), 10월~3월(1회이상 / 3월) ② 권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2월, 11월) 또는 감염병 유행정보, 주의보 등 발령시 추가 실시 	
결핵 환자 통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결핵 환자 통계 정리 		



학교 감염병 발생 시 나이스 보고 요령

※ 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 제2차 개정판(초·중·고·특수학교용: 상세본) p.162 ~ p.168 참조

1. 감염병 환자 등록

- ▶▶ 중분류명 : 감염병 환자들을 등록, 일괄등록, 조회, 보고 할 수 있는 메뉴
- ▶▶ 메뉴경로 :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환자등록]
- ▶▶ 단위화면명 : 감염병 환자등록

● 감염병보고수정

보고일시	2011.03.06 21:26 현재	
학교명	<input type="text"/>	학교장 <input type="text"/>
소재지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학생수	<input type="text"/>	교직원수 <input type="text"/>
급수형태	일반상수도	급식형태 직영자체조리급식

학년	반	발생 인시일	감염병	확진여부	발병학생수		발병학생 치료현황				등교 중지	보건소 신고일
					금번	연간 누계	입원	통원 치료	보고 유무	소계		
1	1	2011.02.26	B형간염	확진	1	27	0	1	0	1	1	

학교조치사항	- 등교중지 및 보건교육 - 전체 소독, 접촉자 관리, 교육지원청 보고
방역기관조치사항	무
향후조치계획	- 추가 발생환자 파악 철저 등 - 감염병발생 확산 방지 지도

2. 감염병 보고 제출

- ▶▶ 메뉴경로 : [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보고제출]
- ▶▶ 단위화면명 : 감염병 보고제출
- ▶▶ 주의사항 : [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 보고제출]메뉴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함.



감염병 발생학교 현장 지도점검 결과

(2021. . .)

○○교육지원청

발생 현황

발병 감염병	학교명	일자	발생환자 수		등교중지 환자수 (치료중)	완치자수	
			금일	누계		금일	누계

- 집단발병 양상 기재(학급당/전체인원 대비 발생수 등 발생추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 등교중지 조치, 보건교육, 소독, 교육지원청 현장점검, 보건소 협의사항 등을 일자별로 기재

-
-
-

보건소 조치사항 등

○ 역학조사 실시, 물품지원 등 보건소 조치사항 등 기재

-
-



부산관내 보건소의 2021년 학생건강증진 사업 현황

① 사하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치아 만들기	초등학교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초등학교 26개교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학교 (관내)	-기간: 4월~11월 -장소: 관내 치과의원 -대상: 초등학교 5학년 학생 900여명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치료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전교생(인원 미정) -내용: ppt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 전문 강사 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1319 금연클리닉	중·고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이동클리닉) -대상: 흡연학생(희망자), 인원 미정 -내용: 강의, 분임토의, 동영상 등	관내 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② 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초등학교(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초등학생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체험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관내)	-기간: 5월~7월(실습생과 함께 진행)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초등학생 -내용: 구강 교육 및 불소도포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건강한돌봄놀이터	초등학교(관내)	-기간: 학기 중 -장소: 돌봄교실 및 교내 시설 -대상: 돌봄교실 이용학생 1, 2학년 -내용: 비만예방 식생활·신체활동 교육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교육청 접수)
흡연음주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3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내용: 학교 흡연·음주예방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③ 영도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관내)	-기간: 3월~12월 -장소: 초등학교 돌봄교실(방문교육) -대상: 관내 신청 초등학교 1~4학년 돌봄 교실 대상자 -내용: 놀이형 영양교육	'21년 아동비만예방 사업 참여기관 희망 신청 (건강한 돌봄 놀이터) 참여 보건소 신청)
초·중·고 구강보건교육	초·중·고(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사업 참여 희망 학교 및 학급 학생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치카치카 양치스쿨	지정 초등학교(관내)	-기간: 미정 -장소: 각반 교실 및 양치시설 -대상: 사업 참여 학교 및 학급 학생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양치시설을 갖춘 초등학교 선정
꿈을 피우자 유아,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교실	유·초·중·고 (관내)	-기간: 2월~12월 -장소: 학교지정장소(방문교육,방송교육등) -대상: 흡연학생(희망자) 및 비흡연 학생 -내용: PPT강의, 분임토의, 동영상 및 방송 교육 등	관내 교육기관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사정에 따른 변경가능)
초등학생 장애예방교육	초등학교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초등학교(신청희망자) -내용: 강의, 동영상, 체험 등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초·중·고 (관내)	-기간: 3월 ~ 11월 -장소: 안심학교 지정장소 -대상: 해당 안심학교 학생 -내용: 알레르기 질환자 유병조사, 환아 알레르기검사 지원, 보건실 내 천식 응급 키트 및 아토피 보습제 비치,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등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TD, Tdap 및 일본뇌염(사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초6~중1 (부산시 전역)	-기간: 연중 -장소: 보건소 및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대상: 2007, 2008년생(단,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여아만 지원가능)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보호자 동반)
음주폐해 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4월 - 장소: 신청 학교 강당, 교실 등 - 대상: 전교생, 신청학급 등 - 내용: 음주폐해예방 교육	관내 학교에 사업 안내(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정신건강증진교육	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신청 학교 지정장소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 내용: 청소년기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대처하기 등 교육	- 서부교육지원청 공문 발송 - 관내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 기관에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자살예방교육	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신청 학교 지정장소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 내용: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 파악, 도움요청하기 등 교육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해소 및 예방 교육, 집단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신청 학교 지정장소 - 내용: 중독관련 증상 파악, 예방 및 해소 방안 알기, 적용하기 등 교육,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알기, 대안 활동 찾아 보기 등	- 서부교육지원청 공문 발송 - 관내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 기관에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대인관계 향상 집단 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미정 - 내용: 지지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등 교육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조절력 향상 집단 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미정 - 내용: (자아존중감) 자기이해, 긍정적 지지 자원 인식 등, (자기조절력) 감정 및 정서조절 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	
또래 생명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 기간: 3월~11월 - 장소: 미정 - 내용: 퀴즈, 역할극 등을 통한 자살 위기 친구 돕기 프로그램	

④ 중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초·중·고 (관내)	-기간: 3~12월 -대상: 관내 초·중·고 -내용: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알레르기 검사 등	관내 초·중·고 보건소로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초등학교 (관내)	-기간: 3월~12월 -장소: 희망 치과 방문 -대상: 관내 초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구강교육, 예방진료 지원(전문의 검진, 불소도포, 홈메우기, 치석제거)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초·중·고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 -대상: 관내 신청학교 학생 -내용: 구강교육, 불소도포·불소양치 배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비만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관내)	-기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내 12주 -장소: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돌봄교실 이용 아동 -내용: 아동비만예방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부산시 주체 참여 학교선정 (희망학교 접수)
장애발생예방 및 점자체험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8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희망학급(5학급) -내용: 강의, 점자체험 등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⑤ 남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흡연 청소년 코칭스쿨	중·고 (관내)	-기간: 5월~10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흡연 청소년(희망자) 10~15명 -내용: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END 활용 (주 1회 / 총 4회 운영)	관내 중·고 희망 신청 (공문 발송 예정)
건강놀이터 운영	초·중 (관내)	-기간: 5월~10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강당 등) -대상: 학교 재학 청소년 -내용: 학교 내 건강놀이터(체험터) 설치 ▷ 금연·절주 패널, 폐 모형, 음주고글체험, 손씻기, 바른건기자가테스트, 식품모형, 심폐소생술, 올바른 양치법 등	관내 초·중 희망 신청 (공문 발송 예정)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실	유치원생 (관내)	-기간: 7월~10월 -장소: 유치원 지정장소(방문운영) -대상: 만4·5세 원아 -내용: 흡연 예방 교육	관내 유치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예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초등학생 (관내)	-기간: 4월~11월 -장소: 초등학교 지정장소(방문운영) -대상: 초등학생 -내용: 후천적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접자 체험 통한 장애체험교육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취약지역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취약지역 (감만동 등)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기간: 4월~7월 -장소: 초등학교 지정장소(방문운영) -대상: 취약지역 5개소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치아관리교육	해당지역 초등학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기간: 4월~11월 -장소: 관내 치과의원(사업참여기관) -대상: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아동 -내용: 예방적 구강관리(불소도포 등) 및 구강검진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장애인 구강케어의 날	관내 특수학교 재학생	-기간: 5월~9월 -장소: 관내 특수학교 1~2개소 -대상: 특수학교 재학생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관내 특수학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유치원생 (관내)	-기간: 5월~10월 -장소: 유치원 지정장소(방문운영) -대상: 만4·5세 원아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바니시 도포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치원생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관내 유치원(방문운영) -대상: 영·유아 -내용: 아토피·천식 예방 관련 교육	관내 유치원, 희망신청 (공문 발송 예정)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관내 19세 이하 *주소지 기준	-기간: 1월~12월 -장소: 보건소 -대상: 아토피·천식 진단을 받은 관내 19세 이하(*소득기준 있음) -내용: 의료비 및 보습제, 알레르기검사 지원	보건소로 개인별 신청 (☎607-3374)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코로나19 극복 심리지원교육	초등학생 (관내)	-기간: 4~6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초등학생 3~6학년 -내용: 코로나19 극복 심리지원 반별 교육	교육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626-4660, 1번)로 신청
중독예방교육 「레몬교실」	초등학생 (관내)	-기간: 5~6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초등학생 4~6학년 -내용: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반별 교육	교육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626-4660, 1번)로 신청
감정조절 집단프로그램 「마음나누기 행복나누기」	초등학생 (관내)	-기간: 5~6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초등학생 5~6학년 중 추천된 학생 -내용: 감정조절 및 감정 관련 상황에 따른 관계 향상 기술 습득	교육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626-4660, 1번)로 신청
정신건강증진 교육	중·고 (관내)	-기간: 2~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중·고등학생 -내용: 정신건강문제의 중요성 및 조기발견, 정신건강문제 예방 반별 교육	교육 희망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626-4660, 1번)로 신청
자해예방 집단프로그램 「마음쓰담」	중·고 (관내)	-기간: 5~10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중·고등학생 관심군 또는 추천된 학생 -내용: 자해 및 자살의 특징, 위험신호, 대처 방안 습득	교육 희망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626-4660, 1번)로 신청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아동, 청소년 (관내)	-기간: 상시 -대상: 관내 아동·청소년 -내용: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교육 희망하는 관내 아동·청소년의 학부모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626-4660, 1번)로 신청

⑥ 동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학생건강증진교실 (금연·절주)	초·중·고 (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신청 초·중·고 학생 -내용: 대면교육, 집합교육, 방송교육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건강증진교실 (비만예방)	초·중·고 (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신청 초·중·고 학생 -내용: 대면교육, 집합교육, 방송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생건강증진교실 (구강건강)	초1~3학년 (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신청 초등학교 1~3학년 -내용: 구강건강교육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구강건강)	초5학년 (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관내 치과의원(사업 참여 치과) -대상: 초등학교 5학년 -내용: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질환 예방 처치에 대한 진료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⑦ 부산진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건강한 돌봄놀이터	관내 4개 초등학교	-기간: 3~7월 또는 9~12월 -장소: 학교 내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아동 -내용: 놀이형 영양 프로그램(24주차)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48주차)	교육청에서 공문 발송 시 신청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신청학교 학생 -내용: 흡연의 피해 및 예방 교육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청소년 심화코칭스쿨	중·고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 및 건강증진센터 -대상: 신청학교 흡연 학생 6~10명 -내용: 흡연학생 심화 상담 및 금연 교육	관내 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고등학교 탄력라인교실	부산진구 내 특성화 고등학교	-기간: 3월~11월(선택가능)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30명 -내용: 주1회 운동교육 및 영양교육 등	관내 특성화 고교대상 공문 발송 후 희망신청
학교 구강보건실	관내 3개교 (부전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기간: 3월~12월 -장소: 학교 내 구강보건실 -대상: 1~4학년 -내용: 비대면 구강보건교육, 구강관리용품 배부 등	해당 학교 공문 발송 후 접수 예정
학교 양치교실	관내 양치교실 설치학교(11개교) : 당감,연학,개화 개금,선암,동양 성서,성전,동원, 개림,가평	-기간: 5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해당학교 비대면교육) -대상: 1~6학년 전교생 대상 -내용: 비대면 구강보건교육, 구강관리용품 배부 등	해당 학교 공문 발송 후 접수 예정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420명	-기간: 4월~12월 -장소: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방문) -대상: 관내초등학교 5학년 아동 및 지역아동 센터 이용 아동 420명 -내용: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흡 메우기 등 예방처치(지역아동센터 아 동에 한하여 추가 진료 실시)	관내 초등학교 공문 발송 후 대상자 접수 예정
학생장애 예방교실	관내 초·중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 장소(방문교육) -대상: 초·중학생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수칙 등	관내 초·중 공문발송(2월중) 후 희망신청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관내 유·초·중·고	-기간: 3월~12월 -장소: 기관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해당 기관 전교생 및 알레르기 질환 의심자 -내용: 동화구연, 집합교육, 방송교육 등	관내 유·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척척교실 (ADHD 행동조절 프로그램)	초등학생 관심군 및 일반학생	-기간: 9월~10월(상세 일정 미정) -장소: 해당 학교(미정)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및 일반군 -내용: ADHD 행동조절 프로그램(문제해결 기술훈련) ▶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 불가능한 경우 교사 대상 교육 진행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자해학생 프로그램	중·고 관심군	-기간: 9월~10월(상세 일정 미정) -장소: 해당 학교(미정) -대상: 자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내용: DBT기반 마음챙김 ▶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 불가능한 경우 교사 대상 교육 진행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I MY MY MINE (생명존중교육)	중·고	-기간: 5월~10월(상세 일정 미정) -장소: 해당 학교 각 교실(미정) -대상: 부산진구 관내 청소년 -내용: 생명의 소중함 인식하기, 자기돌봄 활동, 생명 존중 서약서 작성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교육)	중·고	-기간: 5월~10월(상세 일정 미정) -장소: 해당 학교 각 교실(미정) -대상: 부산진구 관내 청소년 -내용: 보기(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 확인), 듣기(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 경청), 말하기(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 의뢰)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와 조율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교육	관내 중·고	-기간: 3~12월(상세 일정 미정) -장소: 해당 학교(미정) -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 -내용: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	희망학교 치매극복 선도학교 신청·지정 후 일정조율

⑧ 강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미취학 아동 및 학교 방문 흡연예방교실	유·초·중·고 (관내)	-기간: 4월~12월(일정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희망학생 전원 -내용: PPT 강의, 동영상, 교구 활용 등	유·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⑨ 복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실	북구 관내 초·중·고	-기간: 4월~11월 -장소: 해당학교로 방문교육 -대상: 전교생 또는 신청 학년 학생 -내용: 흡연·음주의 폐해와 예방 등 강의	관내 학교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별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협력 치과의원 -대상: 5학년 학생 -내용: 구강검진, PHP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 도포 등 예방처치 -비용: 무료	관내 학교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별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손씻기 기구 대여	북구 관내 초등학교	-기간: 3월~11월 -방법: 기구 대여 후 학교 자체 교육실시 -내용: 손을 씻기 전후 비교를 통한 정확한 손씻기 방법 습득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유선신청)

⑩ 사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1회성 흡연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교육신청 학교(방문교육) -대상: 반별수업 우선, 어려울 경우 학년별/전교생 -내용: 강의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초·중·고 (관내)	-기간: 3월~7월, 9월~12월(주1회) -장소: 사상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시간: 방과 후(16:30~17:30) -대상: 흡연청소년 -내용: 청소년 금연상담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미정 (기존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전교생 또는 학년별 -내용: 강의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비만예방교육 (운동, 영양)	초·중·고 (관내)	-기간: 미정 (기존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전교생 또는 학년별 -내용: 강의 및 실습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심폐소생술 교육	중·고 (관내)	-기간: 미정 (기존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전교생 또는 학년별(20명 이상) -내용: 강의 및 실습	관내 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청소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정신건강증진 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3월~12월 -장소: 신청학교 방문(방송교육 또는 반별 대면교육) -대상: 전교생 또는 학년별, 반별 -내용: 강의(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⑪ 금정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초등 저/고학년 (관내)	-세부사업명: 내 마음을 알아봐 -기간: 3월~10월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대상: 초등 저학년/고학년 -내용: 정서발달향상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초등 저/고학년 (관내)	-세부사업명: 친구야, 놀자 -기간: 3월~10월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대상: 초등 저학년/고학년 -내용: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초등 고학년 (관내)	-세부사업명: 행복키움이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대상: 초등 고학년 -내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초등 고학년 (관내)	-세부사업명: 놀이치료 프로그램 -기간: 3월~10월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대상: 초등 고학년 -내용: 보드게임 집단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초등 고학년· 중·고 (관내)	-세부사업명: OK! DO!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대상: 자해행동을 하는 학생 -내용: 위기관리 프로그램	관내 초·중·고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중·고 (관내)	-세부사업명: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대상: 관내 중, 고등학생 -내용: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	관내 중·고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고등학교 (관내)	-세부사업명: 청소년 '보·안·관'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프로그램실 등 -대상: 고등학생 -내용: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정신 건강지킴이를 양성	관내 고등학교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학부모 (관내)	-세부사업명: 긍정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간: 3월~10월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대상: 관내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 -내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SNS 홍보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 예정)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교육 (금정구청신건강복지센터)	중 (관내)	-세부사업명: 마음건강돌보기 교육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교실 -대상: 중학교 1학년 -내용: 정신건강증진교육	관내 중학교 희망 신청 (광센터 및 교육청에서 공문발송)
	중·고 (관내)	-세부사업명: 생명존중교육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강당 -대상: 중·고등학생 -내용: 자살예방교육	관내 중·고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중·고 (관내)	-세부사업명: 게이트키피교육 -기간: 3월~10월 -장소: 신청학교 내 교실 또는 프로그램 -대상: 중·고등학생 -내용: 자살예방교육	관내 중·고 희망 신청 (교육지원청으로 안내예정)
초등 돌봄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돌봄교실(관내) 1~2학년 아동	-기간: 3월~12월 중 학교별 12주간 -장소: 각 학교 돌봄교실 -대상: 3교 돌봄교실 1~2학년 아동 70여명 -내용: 놀이형 영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부산시에서 일괄 신청 접수예정)

⑫ 동래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튼튼이 불소도포 구강건강교실운영	관내 초등학생	-기간: 5월~12월 -장소: 교내 -대상: 22개교 2,000여명(1,2학년)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희망 학교 신청접수 (공문 발송 예정)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운영	관내 초등학생	-기간: 3월~12월 -장소: 치과주치의 치과기관 -대상: 22개교 1,500여명(5학년 등) -내용: 기본진료(검진,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	희망 학교 신청접수 (공문 발송 예정)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부산맹학교, 내성초등학교	-기간: 3월~12월 -장소: 교내 구강보건실 -대상: 전교생 400여명 -내용: 구강검진, 예방처치 등 방문구강관리	대상 학교와 협의 후 상시운영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실	관내 초/중/고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 -대상: 30개교 -내용: 강의, 금연골든벨, 토크콘서트 등 방문 교육	희망 학교 신청접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⑬ 연제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 5, 6학년 (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관내 지정 치과의원 40개소 -대상: 사전 신청한 초등5,6학년 -내용: 구강검진, 예방진료, 보건교육 등	관내 초등학교 개별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학생 -내용: 담배 및 알코올 중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집합교육 또는 방송교육	관내 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찾아가는 청소년 건강증진교실	중·고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비만 또는 과체중, 건강에 관심 있는 청소년 -내용: 올바른 식습관 개선교육, 비만예방 신체 활동 프로그램, 체력측정 및 사후관리	관내 중·고 희망 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1~2학년 -내용: 영양,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실	관내 초등학교 중 안심학교 신청 및 선정학교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전교생 또는 희망 대상 학년 -내용: 시청각 교육, 인형극 등	관내 초등학교 중 안심학교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장애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교육	초·중 (관내)	-기간: 미정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전교생 또는 희망 대상 학년 -내용: 시청각 교육	관내 초·중 희망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1월~12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 또는 온라인교육) -대상: 흡연학생(희망자) 00명 -내용: 강의, 분임토의, 역할극, 동영상 등	
분노조절 프로그램 “내 안의 험크 다스리기”	초등학교 6학년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내용: 자신의 분노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반벌 집단 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 희망 신청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⑭ 수영구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금연교실	초·중·고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보건소 및 학교 지정 장소 -대상: 흡연청소년 -내용: 금연 상담 및 금연교육 실시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흡연, 음주 예방교실	유·초·중· 고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 장소 -대상: 아동, 청소년 -내용: 흡연, 음주 폐해를 알리고 예방 교육 실시	희망 유치원,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튼튼!쑥쑥 건강증진프로그램	유치원 (관내)	-기간: 4월~11월 -장소: 유치원 지정 장소 -대상: 유치원 원아 -내용: 원아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영양구강·금 연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희망 유치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하안치아! 밝은미소! 치아사랑교실	초등학교 (관내)	-기간: 4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저학년(1~3학년) -내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실시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관내 치과의료기관(미정)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질환치료 등	관내 치과의료기관 및 초등학교 참여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굿모닝! 스쿨워킹데이	초등학교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대상: 전교생 -내용: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등갓길 건강걷기	희망 학교 신청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 예정)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관내)	-기간: 4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중 저학년 (1~3학년) -내용: 아동 비만예방 영양·신체활동 교육	희망 학교 신청 (부산시에서 공문 발송 후 신청 접수예정)

⑮ 기장군보건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초등학교 (관내)	-기간: 4월~12월 -장소: 학교 구강보건실 -대상: 교리, 기장, 대청, 정관초(구강보건실 설치 초등학교) -내용: 구강보건교육, 어린이 불소도포·불소 용액 양치 등	주1회 해당 시설 방문 실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참여방법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초·중·고 (관내)	-기간: 4월~10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희망학교 -내용: 인형극, 금연골든벨 등	관내 초·중·고 희망신청(공문 발송 후 신청접수 예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안심학교 초·중·고 (관내)	-기간: 3월~12월 -장소: 해당 안심학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 ◦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 및 환류 ◦ 저소득층 알레르기 질환 보유 아동 검사비 및 보습제 등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자료 지원 등	안심학교 신청 안내 공문 발송 및 접수
정신건강 검진데이 “내 마음 들리니?”	아동·청소년 (관내)	-기간: 2월~11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장소: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내용: 정신건강상담 및 검사 실시	사전 신청
마음두드림 프로그램	초등학생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초등학생 -내용: 정신건강 정보 전달, 정신건강 OX 퀴즈, 활동, 토의 등	관내 신청 초·중·고 (교육청 연계 접수예정)
청(소)년 정신건강조기중재 “YES”	중학생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학교 지정장소(방문교육) -대상: 중학생 -내용: 강의, 토의, 역할극 등	관내 신청 중학교 (교육청 연계 접수예정)
생명사랑 또래지킴이 양성교육	중·고 (관내)	-기간: 3월~11월 -장소: 신청학교 -대상: 중·고등학생(관내) -내용: 강의, 토의, 역할극 등	관내 신청 중·고 (교육청 연계 접수예정)